

Part I

연방법원 소개 및 연방사법센터의 법원직원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입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두 번째 과정인 ‘연방형사소송절차’ 특히 ‘지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처리절차’ 부분으로, 여러분이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기본절차에 익숙해지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①절차개시단계, ②사전심리절차, ③공판과 유죄답변, ④선고 및 판결 후 절차의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I 절차개시단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루스 클라크입니다.

연방법원에서 새롭게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원사무관실은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사무관실은 연방 시스템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가 시기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또한 법원사무관실은 당사자들이 법원의 행정 또는 절차 관련 규칙들을 준

수할 수 있도록 돕고, 특정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같은 법원사무관실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고, 그 시스템은 연방법원 시스템만큼이나 분주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제 연간 5만건이 넘는 형사사건이 그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법원사무관실은 독립적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아주 복잡한 당사자 대립구조 하에서 형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원사무관실에서 여러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대립구조의 실제 작동 양상과 관련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실례를 보여드리지요.

잭: 안녕하세요, 앤.

앤: 안녕하세요, 잭. 국선변호사 사무소에는 별일 없죠?

잭: 예, 잘 돌아갑니다. 여기 저희 사무실에 새로 오신 알리다 헤레로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지요. 알리다, 이 분은 앤 칼라스씨입니다.

앤: 반갑습니다, 알리다 헤레로 변호사님.

알리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잭: 알리다 변호사님께 당신을 소개하고, 법원사무관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제 사건 기록 중 하나만 살펴볼 수 있을까요? United States v. Clarke 사건이요.

앤: 물론이죠, 사건번호가 뭐죠?

잭: 음..... 어디보자..... 올해 기소되었고, 1228번이네요. 아주 두꺼운 기록 일겁니다. 두 건의 증거배제신청을 한 사건이거든요.

앤: 의뢰인은 대배심에 의해서 정식기소되었나요?

잭: 예, 틀림없이요.

앤: 어느 판사님께 배당되었지요?

잭: 스콧 판사님이요.

앤: 공판기일은 정해졌나요?

잭: 11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알리다: 오우, 여유가 얼마 없게 기일이 잡히는군요.

앤: 형사재판촉진법이 적용되어서 그래요, 일리다. 여기요, United States v. Clarke 사건 기록입니다.

잭: 고마워요.

앤: 어디보자. 리 변호사님의 의뢰인이 보석개혁법에 따라 공판 전 구금이 되었네요. 보석개혁법에 따르면 선행사건에 해당되는군요.

잭: 제가 뭐랬어요, 앤은 모르는 게 없다고 했지요?

알리다: 정말 그러시네요.

앤: 말씀하신대로 두 번 증거배제신청을 하셨네요.

잭: 한 건은 마약단속국 수사관이 제 의뢰인이 했다고 주장하는 구두진술에 대한 것이지요. 다른 한 건은 제 의뢰인의 체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앤: 그렇다면 마약도 불법체포에 따른 결과물이어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겠군요.

잭: 그렇지요.

앤: 물론 검찰 측도 피고인 측의 증거배제신청에 대해 반박하고 있어요. 검사의 답변 역시 리 변호사님의 이의신청과 함께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요.

알리다: 사건담당 검사가 어느 분이죠?

잭: 존슨 연방검사가 담당입니다.

앤: 네, 맞아요. 리 변호사님께서 국선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 연방검찰청 업무를 시작했지요.

잭: 네, 맞아요.

앤: 치안판사님은 언제 증거배제신청의 심리를 여실건가요?

알리다: 잠깐만요, 치안판사요? 스콧 판사님께 배당된 것 아닌가요?

앤: 치안판사는 주심판사의 위탁을 받아 제제신청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판사의 사건처리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스콧 판사님은 늘 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심리를 치안판사에게 위탁하십니다.

알리다: 네, 알겠어요.

잭: 치안판사가 증거배제신청을 기각하면 10일 이내에 스콧 판사님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앤: 치안판사는 사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를 스콧 판사님에게 보내지요. 스콧 판사님은 치안판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피고인 측의 이의를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답니다. 요즘 대부분의 판사는.....

보시다시피, 법원사무관실에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방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방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연방검사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연방 지방법원판사와 연방 치안판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형사사건이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배워야 하고, 정식기소와 증거의 사용배제를 위한 이의신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또한 연방헌법, 연방형사소송법 등 시스템을 관장하는 제반 규정들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 사무원이 방금 전 새 국선변호사에게 언급한 보석개혁법이나 형사재판 촉진법 등 자주 거론되는 법령의 대강을 이해해 두는 것 또한 물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정보들을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본 비디오 프로그램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 연방 형사재판 시스템의 개관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비디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장차 맡게 될 업무분야를 숙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비디오 프로그램의 각 비디오테이프는 안내 자료와 세트를 이루고 있으며, 안내 자료에는 해당 테이프의 각본 내용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내 자료에는 용어해설과 각본에서 다루는 정보와 관련된 서식들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 개요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으니 비디오 프로그램을 보실 때 앞에 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보시는 경우라면 필기할 사항이 있을 때 재생을 멈추고 개요의 공란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개요와 기타 자료는 가지고 가서도 무방하니 참고하시고 나중에 질문을 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리즈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연방 형사재판 시스템의 주요 당사자와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방범죄가 무엇인지,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과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도 논할 것입니다.

이후의 파트들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체포된 후의 예비절차, 예심절차 및 공판절차, 선고 및 판결 이후의 문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연방형사소송법이 거론될 것입니다.

동법의 사본을 입수하여 비디오 프로그램을 볼 때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할 것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은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규율합니다.

연방형사소송법은 연방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연방 사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의회의 검토를 거친 후에 효력을 갖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의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은 연방범죄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형사소송법은 일부 절차의 경우 지방별로 각각 규율되는 것이 적절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방형사소송법 제57조는 각 지방법원에서 절차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지방법원규칙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근무하게 되는 지방법원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 중 누가 먼저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는지 등의 순서 따위를 정하는 지방법원규칙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특별히 순서를 정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7조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연방형사소송법보다 지방법원규칙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법원규칙은 연방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내용이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연방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를 규율하는 연방형사소송법 역시 미국의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요건에 부합되어야만 유효합니다.

연방정부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를 한 경우 그 사람은 헌법상의 권리들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컨대, 헌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정의 구현 시스템은 당사자 대립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립하는 두 당사자는 정부, 즉 검찰과 피고인입니다.

당사자 대립구조 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평결이 이루어지기까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고, 변론을 제출하고, 무죄방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혐의와 관련하여 유죄인지 또는 무죄인지에 대한 평결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당사자 대립구조는 양 당사자가 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자기 입장에서의 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가질 때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양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는 경우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 없이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의 역할이 각 사건에 적용되는 헌법과 법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의의 공정한 실현을 보장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판사는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사는 또한 사건이 법원의 시스템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
써 정의실현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연방형사재판은 연방 지방법원판사가 수행합니다.

연방헌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상원의 제청과 동의를 거쳐 대통
령이 임명하는데, 모든 연방형사사건을 지방법원판사가 수행하는 것은 아닙
니다.

연방 치안판사 또한 연방의 법관입니다.

지방법원판사와 치안판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본적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지방법원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종신직이며, 의회에 의하여 보수를 삭감
당하지 않는데, 이는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법원판사는 환영받지
못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직위를 잃거나 보수를 삭감당하는 일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연방 치안판사는 각 연방지방법원의 지방법원판사가 임명하는 법관이고, 연방 지방법원판사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치안판사의 임기는 8년이며, 상근 치안판사와 비상근 치안판사가 있고, 이들은 민·형사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치안판사 활용 방식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치안판사는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발부, 피고인의 공판 전 석방 또는 구금 명령의 발부,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죄, 즉 1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 사건의 재판 수행, 기타 연방형사소송법하의 다양한 절차의 관장을 맡게 됩니다.

즉, 의회에서는 치안판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해 두었고, 실제로 특정 지방법원에서 어떠한 업무를 치안판사에게 맡길 것인지는 해당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죄 사건의 재판은 지방법원판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법원판사만이 증거배제신청,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신청 등 중요한 공판 전 신청에 대한 최종적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법원판사는 치안판사로 하여금 이 같은 중요한 신청에 대한 심리

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임을 받은 치안판사는 신청에 대한 심리를 수행한 뒤 지방법원판사에게 일응 인정된 사실의 정리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일응 인정된 사실의 정리 자료는 보통 치안판사의 보고서라고 불리며, 치안판사의 보고서(report)와 의견서(recommendations)는 R and Rs라고 지칭됩니다.

치안판사의 보고서와 의견서를 수령한 양측 당사자는 1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받게 되고, 이의에 대한 결정은 지방법원판사가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방법원판사는 치안판사의 보고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일방이 치안판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재나 기각 또는 각하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담당 지방법원판사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치안판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업무에는 일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치안판사는 중죄와 경죄 사건 모두에서 상당히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선택사항)

다음으로, 연방범죄의 정의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지요.

연방범죄란 무엇이고, 주(州)법 위반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정부구조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기 분리된 권능을 부여하고 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형사법원의 구조 또한 연방정부의 형사법원과 주정부의 형사법원이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법 마약 판매와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가 이를 처벌하는 법령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마약 판매 행위를 한 사람은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가 연방법원에 기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내에서 기소되는 범죄사실의 대부분은 주법 위반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정 주의 의회에서 통과된 형사 관련 법령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뉴욕 주에서 통과된 법령은 뉴욕 주에서 통용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주나 연방의 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방의 형사 관련 법령, 즉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형사법은 연방법원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의 형사 사법 시스템과 연방의 형사 사법 시스템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연방의 형사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주법원에 기소될 수 없고, 주의 형사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연방법원에 기소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방법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제한된 재판권을 갖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권이란 특정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원의 영향력과 권능을 뜻합니다.

연방법원이 제한된 재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연방법원이 연방의회로부터 심리권능을 부여받은 특정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만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의회는 연방법원에 기소될 수 있는 범죄사건 대부분을 미연방법규집 제 18장에 열거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법마약 관련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미연방법규집 제21장의 조항들에

서도 연방법원에 기소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방범죄’를 말할 때 이는 연방의회가 연방법원에 기소되도록 정한 형사법 위반행위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아무 범죄나 연방범죄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범죄, 즉 미국연방에 대한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형사실체법이 특정 주만이 아닌 미국 전체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방범죄는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규율할 권한을 갖고 있는 영역과 관련된 범죄로서, 은행업 관련 범죄, 주간 교역 관련 범죄, 무역 관련 범죄 등 국가이익의 영역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예컨대, 식료품점에서 강도행위를 벌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강도죄로 주법원에 기소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강도사건은 주법원에 기소됩니다.

그러나 만약 은행에서 강도행위가 벌어졌다면 범죄자는 주법원과 연방법원 두 곳 중 어느 곳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 피해 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의 구성원이고, 연방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은행업 관련 규제권한에 종속되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험가입한 상태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은행의 예금을 강탈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의회가 규제권한을 갖는 국가의 은행업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국립은행과 예금보관소, 그 밖에 연방정부의 국고관리상 필요에 따른 재무 관련 기관을 설립합니다.

따라서 은행강도 행위는 주법에 따라 주법원에 기소될 수 있기도 하지만, 의회는 의회가 규율하는 은행 기타 재무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은행강도 행위가 연방범죄로서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이미 통과시킨 것입니다.

연방범죄로 인정되는 두 번째 유형은 우체국, 국세청 등 연방정부의 기관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재물손괴 행위를 예로 들어봅시다.

통상적으로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한 사람은 주법원에 기소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우편물이나 체신부 소유 장비를 손괴하는 것은 연방범죄를 구성하게 되고, 정부의 우편물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은 행위들은 연방정부기관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에 연방의회는 이들을 연방범죄로 정하였습니다.

연방범죄로 인정되는 세 번째 유형은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범죄입니다.

이번에는 폭력사건을 예로 들어봅시다.

민간인의 폭력사건은 일반적으로 주법원에 기소되지만, 해당 폭력행위가 연방재산과 관련된 것일 때, 예컨대 군기지를 방문하던 중에 민간인 한 명이 다른 민간인 한 명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경우라면 이는 동종범죄법에 의하여 연방범죄로 취급되어 연방법원에 기소됩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때 비록 민간인간의 폭력행위에 적용되는 연방형사법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연방법원에 기소된다는 점입니다.

동종범죄법에서 의회는 연방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연방재산이 위치한 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그 법이 연방범죄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되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사건 피고인은 연방범죄행위를 이유로 연방법원에 기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는 사례마다 금지된 행위와 연방정부가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관련성이 바로 의회가 해당 행위를 연방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도

록 만듭니다.

다음으로, 연방법원에 형사사건을 기소하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통치구조하에서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분리되어 별도로 독립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스스로는 특정한 행위, 예컨대 은행강도 행위가 연방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다.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정식으로 형사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기능을 통할합니다.

대통령은 법무부를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국의 법무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로펌이라고 묘사되곤 합니다.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94개의 각 재판구에서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 추가하여 선임연방검사를 임명합니다.

선임연방검사는 각 재판구의 정부측 변호사이며, 연방지방법원에서 배타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위를 대리합니다.

선임연방검사는 또한 각 재판구의 형사사건 건수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방검사를 고용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각 재판구의 선임연방검사의 임무는 문제된 범죄행위를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된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일은 통상 연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화된 수사기관들이 말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청은 수사기관에서 수집해 온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방검찰청을 위하여 문제된 연방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몇 개의 수사기관들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방수사국에서 시작해보기로 하지요.

연방수사국, 즉 FBI는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FBI는 할당된 은행업 관련 범죄, 도박, 화이트칼라 범죄, 공직자의 부정부패, 장물의 주간교역, 선거 관련 범죄, 시민권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합니다.

마약단속국, 즉 DEA는 역시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DEA는 마약사건에 관한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연방수사기관입니다.

주류·담배·총기단속국, 즉 AT&F는 재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AT&F는 총기관리법 위반, 방화, 불법 폭발물 사용, 불법 주류 제조와 관련

된 사건을 수사합니다.

감찰부 역시 재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감찰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부발행 수표 위조 등과 같은 연방통화법 위반 사건을 수사합니다.

국세청 산하 수사국, 즉 CID는 조세법 위반 사건을 수사합니다.

우편국 소속의 우편물 조사관은 우편물 이용 관련 범죄를 수사합니다.

각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은 각 관할범위에서 문제된 연방범죄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 결과 연방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사관들은 대응 연방 검찰청에 기소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사건에 대한 검토 후 연방 검찰청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선택사항)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며,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연방 검찰청과 협력하는지 살펴봅시다.

이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마약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이 가상사건을 계속 다루면서 이 사건이 연방 형사법원 시스템의 단계를 거쳐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약단속국 수사관인 랄프 브라운이 센터빌 구역에서 마약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브라운은 신분을 위장한 채 외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밴에 탑승해 있는 두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이어 브라운이 그들에게 코카인을 살 수 있는지 묻자, 조수석에 탄 승객이 운전자에게 몸을 돌려 무언가를 말하는데, 브라운은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후일 이름이 안젤라 스미스라고 밝혀진 그 승객이 밴에서 내립니다.

스미스와 브라운은 길을 걸으며 가격 흥정을 하고, 결국 브라운은 스미스로부터 코카인 540그램을 구입합니다.

구매가 끝난 후 브라운은 거래장소를 벗어납니다.

브라운은 근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마약단속국 체포팀에게 무전기를 통해 스미스와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알립니다.

체포팀이 출동하여 스미스를 붙잡는 동안 밴은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떠날

니다.

그 동안 브라운은 필드 테스트를 통해 스미스로부터 받은 약품이 코카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브라운이 코카인 판매자가 스미스임을 확인한 후 스미스는 체포되고, 묵비권을 고지받습니다.

체포 후 스미스에 대한 수색 결과, 스미스는 마약단속국에서 미리 표시를 해 둔 돈으로서 브라운으로부터 코카인 판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어째서 주나 지방의 수사기관 소속 수사관이 아닌 마약단속국의 수사관이 사건에 관여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가 마약 소지 및 거래를 연방범죄로 규정한 법을 통과시킨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방범죄에 대한 수사는 연방수사기관에서 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또 불법적인 마약관련 행위들은 이미 주나 지방 단위에서 규제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의회가 마약 소지 및 거래를 위법한 것으로 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국내 대다수의 불법 마약거래가 주(州)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내로 수입된 불법마약은 한 주에서 팔리고, 다음에는 다른 주에서 팔리고, 또 다른 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마약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여타 교통수단을 통해 주에서 주를 오갈 수 있습니다.

마약이 주 사이를 오갈 때에는 많은 다른 주의 사람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주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의 상사에 관한 조항은 의회에 주간 상사거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활동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 상사에 관한 조항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마약의 소지 및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은 미연방법규집 제21장 제812조에 모아져 있고, 여기에서는 법정에서 많이 들어보신 바 있는 ‘규제약물’이라는 용어로 불법 마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구조 하에서는 주나 지방 단위에서도 마약관련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만드는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한 주만을 배경으로 한 불법 마약 활동을 보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주가 관련된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방헌법의 통상조항은 의회에서 오로지 한 지방 또는 주 안에서 발생한 불법 마약 활동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의 주, 도시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불법 마약 활동에 대하여 연방의 마약관련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마약단속국 수사관과 같은 연방 수사기관의 수사관은 대개 비교적 대규모이고 광범위한 불법 마약 활동의 수사에 투입되며, 우리가 살펴보는 가상사건도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연방수사관은 광범위한 세력을 갖고 있는 마약거래단의 불법 마약 활동을 조사하던 중 거래단 조직원이 스미스가 체포된 현장 근처에서 다량의 마약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마약수사국은 안젤라 스미스와 같은 거리 판매원을 체포하기 위한 함정수사를 기획합니다.

아울러 마약수사국은 스미스와 같은 거래 활동의 하부 조직원을 설득해서 상부 조직원을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가상 사건의 사실관계로 돌아가 봅시다.

스미스가 체포되어 있는 동안 브라운 수사관에게 일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랄프 브라운: 이렇게...

안젤라 스미스: 존스 따위의 녀석과 엮이는 게 아니었어. 그 놈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랄프 브라운: 진정해요. 이제...

안젤라 스미스: 이봐요! 마이클 존스나 조사해요! 뱀에 타 있던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판 마약을 건네준 사람이니까요.

랄프 브라운: 마이클 존스?

나중에 브라운 수사관은 컴퓨터에서 존스의 이름을 찾아보고 그가 대규모 절도와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 전과를 갖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다음으로 브라운은 마약단속국의 파일에서 존스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는 존스가 뱀의 운전자였음을 확인합니다.

다른 마약단속국 수사관이 존스에 대하여 가능한 사건의 준비를 하는 동안 브라운 수사관은 스미스가 수속을 위해 연방보안관 사무실로 인도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검사의 스미스 사건 준비를 돕기 위하여 연방검찰청으로 향합니다.

이는 연방형사소송법 제5조가 영장 없이 체포를 한 수사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체포된 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접견 가능한 치안관사의 목전에 구인해 가서 최초혐의인부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조는 또한 영장 없이 체포된 자가 치안판사에게 구인되었을 때 그에 대한 고발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은 연방형사소송법 제3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주장되는 범죄를 구성하는 기초사실에 대한 진술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4조는 그 고발에는 선서진술서도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진술서에는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체포된 피의자 안젤라 스미스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선서진술서는 선서하고 진술한 서면을 뜻하고, 상당한 이유란 체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준입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용어는 앞으로 매우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판사가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판사가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지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체포된 자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체포를 감행하는 수사관들에 대하여 수집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범죄가 발생한 사실과 체포되는 자가

그 범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스미스의 최초 혐의인 부절차에 앞서 브라운 수사관은 연방검사를 만나 스미스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고발장 초안의 작성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론다 존슨: 안녕하세요?

수사관 브라운: 안녕하세요?

론다 존슨: 연방검사 론다 존슨입니다.

수사관 브라운: 수사관 랄프 브라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론다 존슨: 앉으시지요.

수사관 브라운: 네.

론다 존슨: 처음 뵈는 것 같은데요, 새로 근무하게 되신 건가요?

수사관 브라운: 스미스 사건이 제 첫 마약거래 함정수사입니다.

론다 존슨: 시작이 좋군요.

수사관 브라운: 고맙습니다.

론다 존슨: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훌륭하더군요. 체포도 유효하고 해 볼만한 사건인 것으로 보이네요.

수사관 브라운: 네.

론다 존슨: 행위자 식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수사관 브라운: 물론이지요. 스미스가 판매자입니다.

론다 존슨: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지요.

수사관 브라운: 좋습니다. 뱅을 운전했던 사람에 대한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이름은 마이클 존스고 두 번의 전과가 있습니다. 대규모 절도와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이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자도 잡아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론다 존슨: 그 자를 잡아들이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은 스미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준비합시다. 당신의 선서진술서가 고발장에 첨부되어 제출될 것입니다.

수사관 브라운: 선서진술서 작성은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존스 사건과 같이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론다 존슨: 고발장에는 반드시 선서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제가 고발장을 준비하는 동안 선서진술서의 초안을 마련해보시지요.

수사관 브라운: 네.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합니다. 선서진술서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지요?

론다 존슨: 치안관사로 하여금 안젤라 스미스가 코카인을 배급했다는 사실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짓도록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수사관 브라운: 코카인 배급. 그게 그 여자가 기소되는 근거로군요.

론다 존슨: 맞아요. 21 U.S.C. § 841 (a) (1)의 위반을 이유로 기소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코카인과 같은 규제약물의 의도적 배급이 위법하게 됩니다.

수사관 브라운: 그게 고발장에서 주장할 사항이라면 선서진술서에서 더 언급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존스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론다 존슨: 압니다. 하지만 고발장과 선서진술서는 별개입니다. 고발장은 단순히 기소당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범위반사실의 기본적인 부분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고발장에는 이를 행하는 사람 즉 당신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기소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이 언급되지요. 따라서 선서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고발장에서 언급된 사실을 보완하고,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믿을만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관 브라운: 좋아요. 선서진술서를 만들죠. 제가 여기서 서류작업에 매여 있는 동안 존스가 거리에서 계속 마약을 팔고 다닐까봐 마음이 쓰이는군요.

론다 존슨: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서류작업 말고도 또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미스를 체포했어요. 그녀를 상대로 오늘 당장 정식기소를 했으면 하는 것 같군요.

수사관 브라운: 당연히 그래야지요.

론다 존슨: 적절한 선서진술서가 없다면 치안판사는 고발장에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수사관 브라운: 아... 음...

론다 존슨: 스미스를 상대로 한 형사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둘은 그냥 집에 가야할 것이고요. 스미스 역시 집에 가게 되겠지요.

수사관 브라운: 하지만 우리가 충분하고도 믿을만한 사실을 기재한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보여준다면 그녀는 체포된 채로 치안판사 앞에서의 최초혐의인부절차를 밟게 되겠지요?

론다 존슨: 물론이지요.

수사관 브라운: 아,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군요. 교육 때 배웠어요. 최초 혐의인부절차에서 치안판사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군요.

론다 존슨: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때 저는 스미스가 구금된 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수사관 브라운: 좋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선서진술서 초안을 작성해 오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론다 존슨: 좋아요. 이제 처리하도록 하지요. 피고인 수속을 마치기 전에 선서진술서와 고발장을 준비해야겠군요. 이 건이 처리되고 나면 존스 사건을 검토합시다.

수사관 브라운: 감사합니다.

가상사건인 United States v. Angela Smith 사건의 고발장과 선서진술서 사본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이 시점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선택사항)

연방보안관이 주관하는 절차를 밟은 뒤 스미스는 유치장에 구금된 채로 치안관사 앞에서의 최초 혐의인부절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유치장에 있는 동안 스미스는 예심조사관과의 접견을 거치게 됩니다.

예심조사관, 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예심조사에 관한 책임을 위임받은 보호관찰관은 스미스와 같은 형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함으로써 법원을 보조합니다.

예심조사관은 처음으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의 개인내력,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가족관계, 취업상태, 사회유대정도에 관한 정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어 예심조사관은 취득한 정보들을 피고인의 협조를 통해 검증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합니다.

다음으로 이 정보들을 종합한 보고서를 만들어 치안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치안판사는 최초혐의인부절차에서의 보석과 관련한 쟁점, 즉 피고인을 공판이 열릴 때까지 석방할 것인지 구금해 둘 것인지 여부와 관련한 쟁점의 판단시에 이 예심조사보고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방검사에게도 보석심문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예심조사보고서의 사본이 송부됩니다.

접견의 목적은 위와같이 엄격히 한정되기 때문에 예심조사관에게 노출된 그 어떤 정보도 이후의 법원에서의 절차에서 유죄 여부와 관련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후일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면 위 접견시 취득된 정보는 보호관찰관이 양형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접견하기에 앞서서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각기 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취득된 정보가 양형시에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아울러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어떠한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할 의무가 없음을 또한 고지합니다.

피고인을 접견하는 예심조사관은 종종 여러분의 자료 중에 있는 고지 서식을 활용합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뒤에 답변을 거부하는 피고인들도 존재합니다.

예심조사관들은 또한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의 선임을 원하고 이를 감당할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변호사건 골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예심조사관: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안젤라 스미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요.

예심조사관: 알겠습니다.

안젤라 스미스: 법원에서 선임해 줄 수는 없나요?

예심조사관: 법원에서 당신이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확인하면 대신

선임해 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하는건가요?

안젤라 스미스: 네, 네. 무료라면요.

예심조사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상황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임을 선서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당신에게 자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겁니다. 먼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은 재산상황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상황진술서 서식 사본이 여러분의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예심조사관이 재산상황진술서를 치안판사에게 제출하면 치안판사는 이를 검토한 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치안판사는 형사정의법에 의거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게 됩니다.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6조는 기소된 범죄자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의법은 연방법원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피고인

에게 국선변호인을 제공함으로써 위 권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의법은 중죄 사건, 경죄 사건 및 기타 유죄평결이 되면 피고인이 구금될 수 있는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의법에 의거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종종 형사정의법 사건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형사정의법은 연방지방법원에서 다른 국선변호인 선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형사정의법은 개업 변호사로서 상당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들을 등록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연방지방법원에서 선정한 등록국선변호인 중에서 선택되게 됩니다.

형사정의법은 또한 무자력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기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지방의 경우 일반 개업변호사와 국선변호인 기구에 속해 있는 변호사가 무자력 피고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형사정의법은 연방 국선변호사 기구와 공동체 국선변호인 기구, 이 두 종류의 국선변호인 기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국선변호인 기구는 구성된 비영리 변호 기구로서 개업변호사들의 집

단으로 구성됩니다.

공동체 국선변호인 기구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형사정의법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변호사로서 이미 연방지방법원의 공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각 국선변호사 사무소는 각 지방의 선임 연방검사에 대응하는 선임 국선변호사가 운영합니다.

선임 국선변호사는 법무부가 아닌 법원에서 임명합니다.

선임 연방검사와 마찬가지로 선임 국선변호사는 국선변호사나 직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안판사가 스미스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형사정의법에 따라 국선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잭 리를 국선변호인으로 임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이 임명되었음을 통보받은 리는 스미스를 접견하기 위해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잭 리: 스미스양.

안젤라 스미스: 네, 제가 스미스입니다.

잭 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리입니다. 연방 국선변호사 기구의 변호사이구요. 당신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명함을 받으시지요.

안젤라 스미스: 알겠어요. 누가 당신을 지명했다는거죠?

잭 리: 법원의 치안판사로부터요. 그 치안판사는 형사정의법에 따라서 저를 지명한 겁니다. 형사정의법은 당신처럼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변호사를 제공해 주도록 하고 있지요.

안젤라 스미스: 치안판사라..... 판사와 비슷한 건가요?

잭 리: 맞습니다.

안젤라 스미스: 그냥 판사가 지명한 거라면 더 나은 게 아닌가 해서요. 궁금한 게 있는데, 판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서 어떻게 저를 도울 수가 있는거죠?

잭 리: 좋은 질문이로군요, 스미스 양.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저는 법원과의 접촉 과정에서 법률과 윤리 규칙을 준수할겁니다. 이 사건에서 저를 당신의 변호사로 지명한 것은 물론 법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판사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젤라 스미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잭 리: 연방 국선변호사 기구를 위해 일합니다.

안젤라 스미스: 그게 뭐죠?

잭 리: 법원과 분리된 변호사들의 조직입니다. 형사사건 변호 전문 변호사들

로 구성된 로펌과 비슷하지요.

안젤라 스미스: 저는 그저 당신이 사선변호인과 다름없이 저를 대변해 주셨으면 하네요.

잭 리: 그럴겁니다. 사선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사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일이 제 직업이기도 하구요.

안젤라 스미스: 하지만 당신이 판사를 불쾌하게 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잭 리: 이것봐요. 스미스 양. 판사가 이 사건에서 당신을 변호하도록 저를 임명할 때에는 어느 다른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최대한의 변론을 제공하는 것이 제 직업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기도 하구요.

안젤라 스미스: 좋아요. 많이 안심이 되는군요. 줄곧 저는 스스로 변론을 해야할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당신에게 나를 변호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잭 리: 네. 맞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겁니다. 법원은 당신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임의로 포기했을 때에만 당신이 스스로 변론을 하도록 할 거예요.

변호인 없이 스스로 변론을 하는 피고인을 'pro se'라고 칭합니다. 라틴어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이지요.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pro se, 즉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됩니다.

포기란 의도적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권리를 단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pro se, 즉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공판에서 뿐만 아니라 공판전 심리절차에서도 스스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 스미스는 리 변호사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도록 하기로 결정합니다.

즉, 그녀는 pro se가 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비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리 변호사가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안젤라 스미스: 좋아요. 저는 당신이 저를 대리해 주었으면 해요. 당신은 변호사로서의 교육을 받았고,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제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에 관해 법원이나 마약단속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잭 리: 아닙니다. 저는 당신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정보 중 당신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이 저에게 정확히 어떤 사건

이 발생한 것인지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해도 만약 제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법원이나 마약단속국에 보고해야 한다면 당신이 저에게 말할 때 솔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의무는 당신이 제게 말한 사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과 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말이지요.

안젤라 스미스: 그렇다면 사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당신에게 말해도 되겠군요.

잭 리: 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에는 말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안젤라 스미스: 네. 알겠어요.

잭 리: 좋아요. 이제 보석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저에게 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변호인과의 접견을 마쳤으므로 이제 치안관사 앞에서의 최초혐의인부절차로 단계가 넘어가게 됩니다.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음 파트에서는 최초혐의인부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심문, 대배심의 기소, 기소사실 인부, 증거개시, 이의제기와 같은 공판전 심리에서의 절차들에 대하여 가상사건을 보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형사사건에서의 당사자 대립구조의 주된 내용에 대하여 이제 보다 친숙
해지셨기 때문에 공판 전 심리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한결 쉬울 것입니다.

Part II

이 프로그램은 1991년 워싱턴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미 연방 형사소송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미 연방 사법센터 제작

법원 공무원들에게 연방 법원을 소개하기 위한 연방 사법센터의 교육 자료 시리즈

두 번째 프로그램 :

미국연방형사소송절차

Part II. 사전 심리절차(Pretrial Proceedings)

이 편에서는 피고인이 최초로 법정에서 출석해서부터 사건이 정식 공판에 회부되기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심중팔구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공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심리절차라 불리는 이 절차에서 대부분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사전 심리 사건이라 불리는 많은 수의 중요 사건들은 이 때에 발생합니다. 지난 편의 마약 사건에서 적용되었던 연방형사소송법이 이 편에서도 논의의 전제가 됩니다. 안젤라 스미스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피고인 스미스는 코카인을 판매한 혐의로 마약단속국의 브라운 수사관에게 체포됐습니다. 다른 용의자 마이클 존스는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지요. 스미스가 연방 보안관에 의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브라운 수사관은 론다 존슨 연방검사와 사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존슨 검사는 스미스에 대한 기소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운 수사관의 도움으로 존슨 검사는 스미스에 대한 고발장과 선서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해 요구되는 고발장과 선서진술서는 스미스가 연방 치안관사 앞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최초혐의인부절차에서 제출될 것입니다. 한편, 스미스는 그녀의 독방에서 그녀의 변호인인 국선 변호사 잭 리와 면담했습니다. 이제 안젤라 스미스가 연방 치안관사 앞에 처음 출석하는 최초혐의인부절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초혐의인부절차는 연방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법원사무관 : 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사무관과 판사님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물론 사건을 심리할 치안관사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법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곧 무언가를 행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예컨대, 법원이 명령을 내렸다는 말에서 법원

은 곧 연방 판사나 연방 치안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 : 안녕하십니까? 기록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혀 주시지요.

론다 존슨 : 안녕하십니까? 저는 론다 존슨 연방검사입니다.

잭 리 :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스씨의 변호를 맡은 잭 리입니다.

판사 : 성명을 진술해 주시지요.

안젤라 스미스 : 안젤라 스미스입니다.

판사 : 스미스씨한테 선서를 시켜 주시지요.

법원부사무관 : 당신은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신 앞에 맹세합니까?

안젤라 스미스 : 예 그렇습니다.

판사 : 스미스씨, 당신은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도 강요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진술을 했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변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상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진술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중간에 이를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진술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모두 이해하겠어요?

안젤라 스미스 : 예, 판사님.

판사 : 변호사님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나요?

안젤라 스미스 : 예

판사 : 스미스씨, 당신의 재산상황 진술서를 검토한 후 형사정의법에 따라 제가 리 변호사를 당신의 변호인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젤라 스미스 : 알고 있습니다. 저는 리 변호사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판사 : 좋습니다. 존슨 검사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론다 존슨 : 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스미스씨에 관한 고발장과 선서진

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 : 스미스씨, 당신은 21 U.S.C. § 841에 규정된 금지약물 중 코카인 유통 혐의로 연방 검찰에 고발돼서, 오늘 이 자리에 소환되었습니다. 오늘 이 심리의 목적은 당신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고지하고 보석에 관한 몇 가지 예비 결정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방금 저는 이 사건에 관해 연방 검찰이 제출한 고발장과 선서진술서를 낭독했으며, 스미스씨가 규제약물인 코카인 판매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미스씨, 당신은 이 사건에서 예비심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중죄 사건이거든요. 예비심문에서 검찰측은 코카인 판매 범죄가 저질러졌으며 스미스씨가 이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리 변호사님, 피고인은 예비심문을 원하고 있나요?

잭 리 : 예, 원하고 있습니다.

판사 : 좋습니다. 즉시 기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석에 대해서부터 논의해볼까요? 제가 예비 조사보고서를 읽어 봤는데요. 먼저 검찰측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존슨 검사님, 검찰측은 연방 법규집 제18장 3142조 d, r, f항에 따라 구속의 유지를 원하시나요?

론다 존슨 : 예, 보석개혁법 및 연방 법규집 18 U.S.C. § 3142(d),(r),(f)에 따라 스미스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판사도 지적했듯이, 연방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해 제기되는 최종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스미스가 석방되느냐 아니면 계속 구속되어 있느냐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조의 이 부분을 따름에 있어, 치안판사는 연방 법규집 제18장에 수록된 보석개혁법의 여러 조항들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1984년 제정된 보석개혁법에 따르면, 모든 피고인은 그가 도주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나아가 사회에 위협이 되지만 앓는다면 보석금을 납입하거나 그 밖에 어떤 다른 조건 없이 모두 석방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건이 마련됐을 때에도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전에 석방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치안판사는 피고인이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감독 하에 지내야 한다거나 여행과 개인적 만남, 주거에 관한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직업을 구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고 범죄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이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몰수 처리되는 보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 납부와 관련하여, 보석개혁법은 피고인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의 보석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보석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재판 전에 무조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재판 전 피고인의 구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금전적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전에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에 의해 부과된 모든 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더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판사 : 방금 낭독한 조건들을 부과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명합니다. 피고인이 만약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별도의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피고인 : 예, 판사님

판사 : 피고인이 석방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정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이 부과되어 석방되었을 때 법원에서는 보석 서류를 작성해서 그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합니다. 이 비디오에 첨부된 서류 중에 석방조건명령서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에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모든 석방조건이 설명돼 있으며, 뒷장에는 석방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사건에 관해서는 치안판사는 구금심문이라 불리는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구금심문은 폭력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대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도주나 사법방해의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 스미스처럼 마약 범죄로 최장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피고인의 경우에 열리게 됩니다. 구금심문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전 석방의 조건들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피고인이 석방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심문을 한 결과, 치안판사가 판단하기에 어떠한 석방조건도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확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면, 치안판사는 재판 기간 동안 피고인의 구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은 다음의 각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재판 중 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피고인이 도주할 위험성이 너무 커서, 치안판사가 어떠한 석방조건으로도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때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재판전 석방이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어서, 치안판사가 어떠한 석방조건으로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입니다. 셋째, 어떠한 석방조건으로도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치안판사가 판단한 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검찰은 더 무거운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치안판사가 피고인의 장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말해 만약 피고인이 석방되면 피고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안판사는 피고인의 석방이 그러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써 판사에게 확신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젤라 스미스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판사 : 좋습니다, 리 변호사님

잭 리 : 판사님, 심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일을 좀 연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판사 : 피고인측의 구금심문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검찰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론다 존슨 : 저희는 부동의합니다.

판사 : 좋습니다. 음.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구금심문은 5일 이상 연기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럼 5일 후로 심문기일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리 변호사님 괜찮으신가요?

잭 리 : 예, 좋습니다.

판사 : 스미스 피고인! 예심조사 보고서를 읽어 보니, 피고인은 전과도 없고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보석개혁법에 따라 구금심문이 열릴 때까지는 피고인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미 피고인에게 말해 줬을 지도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로는 최장 징역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잭 리 : 판사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인에게 말해 줬습니다.

판사 : 그 점이 의미하는 것은, 피고인측의 반박이 있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의 구금심문에서는 법원이 일정한 법률상의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저는 어떠한 석방조건도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없고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처럼 중대한 마약범죄에서는 그러한 추정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구금심문에서 검찰측은, 스미스가 540그램의 코카인을 판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리 변호사를 통해 그 수사관이나 그 밖에 다른 검찰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나 증거물을 신청해서 제출할 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안판사는 방금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되는 마약 사건에서는 보석개혁법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담보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석방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요. 이러한 법률상의 추정도 법에 따라 번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그러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증거들을 구금심문에서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은 다시 검찰측 코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판사 : 자, 스미스 피고인, 왜 리 변호사님이 구금심문을 준비할 시간을 얻기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었는지 아셨겠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심문입니다. 자, 이제 예비심문의 기일을 잡아 봅시다.

스미스에 대한 최초혐의인부절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안판사는 스미스에게 그녀의 혐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스미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이므로, 형사정의법에 따라 연방 국선 변호사로 하여금 그녀를 변호토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스미스는 또한 그녀에게 묵비권이 있

음을 고지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어떠한 진술도 요구받지 않으며, 그녀가 한 진술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스미스는 또한 예비심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 스미스는 보석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구금심문이 열릴 때까지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스미스에 대한 최초혐의인부절차 이후 존슨 연방검사와 브라운 수사관은 존슨 검사실로 돌아와서 또 다른 용의자인 마이클 존스에 대한 고발장과 선서진술서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이유는 존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지요. 스미스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범인을 체포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존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는 범행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거든요. 브라운 수사관은 뱅을 운전했던 사람으로 존스를 지목하였고, 검찰에서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고발장이나 선서진술서가 제출되면 이로써 어떠한 범죄가 행해졌고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에서 그 집행권한을 부여받은 수사관이라면 누구든지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판사의 서명을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게 인신구속 권한을 부여하는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그것은 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방 헌법은 영장의 발부가 존슨 검사나 브라운 수사관 같은 수사기관의 직무가 아니라, 치안판사와 같은 중립적인 사법부의 직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방형사소송법 제4조는 선서나 증언에 의해 입증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4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안판사는 존스에 대한 영장을 심사함에 있어,

존스에 대한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과 브라운 수사관의 선서진술서에 기재된 사실이 모두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만 비로소 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란 어떠한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 범죄를 마이클 존스가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존스에 대한 고발장과 선서진술서가 작성된 후 존슨 검사와 브라운 수사관이 이 서류들을 치안판사에게 제출하고 존스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수사관은 판사실로 직접 치안판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안판사는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이 아주 많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치안판사는 선서진술서에 기재된 체포 용의자, 즉 이 사건에서는 마이클 존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선서진술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스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하여 연방형사소송법 제4조 및 연방 헌법상의 요건들이 충족되고, 존스에 대한 고발장과 선서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브라운 수사관이 선서를 하면, 치안판사는 영장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영장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치안판사는 연방 보안관으로 하여금 존스를 체포해서 즉시 가까운 사법당국에 인치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곧 보시겠지만, 마이클 존스도 바로 체포되어서 그의 사건도 안젤라 스미스의 사건과 병합되어 기소될 것입니다. 존스 사건에서 치안판사가 서명한 체포영장의 사본과 영장 청구에 사용했던 선서진술서가 교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동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

자, 이제 치안판사가 언급했던 예비심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비심문은 심리의 형태를 띠니다. 따라서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는 연방형사소송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범죄 사건은 치안판사가 아닌 연방 판사가 심리하는데, 이러한 중범죄

혐의로 고발된 피고인은 예비심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심문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피고인에 대한 최초 혐의인부절차일로부터 10일 내에,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으면 최초 혐의인부절차일로부터 20일 내에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심문의 목적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거나 보석인 상태에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유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방범죄가 저질러졌으며, 피고인이 이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검찰측이 입증했다면, 연방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유지할 것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르면, 예비심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고발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이 구속되어 자신의 자유를 잃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법원의 즉각적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견 실무상의 문제인데, 예비심문은 자주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절차의 또 다른 진행측인 대배심 때문입니다. 대배심은 보통 피고인에 대한 예비심문이 열리기 전에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합니다. 대배심의 기본적인 목적은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법정에서 세울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대배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소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예비심문 기일 전에 대배심이 이러한 결정을 하면, 예비심문을 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배심에서 상당한 이유의 판단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은 기소 인부절차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 치안판사는 스미스에 대한 예비심문에서 그녀가 범행을 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의 이유 때문에 스미스에 대한 예비심문과 구금심문이 하나의 절차로 병합되었습니다. 따라

서 스미스는 재판전에 계속 구속되었습니다. 한편, 스미스에 대한 예비심문과 구금심문 직후에 존스가 그의 룸메이트 로렌스 그린e과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린e은 존스가 체포될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친구한테서 나중에 존스의 체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체포 당시 마약단속국의 수사관들은 아파트에서 2킬로그램의 코카인을 찾습니다. 존스가 서 있던 곳에서 약 10피트 떨어진 곳이었지요. 코카인은 쇠로 된 커다란 과자상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과자상자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조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 중 한 명이 체포의 와중에도 코카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체포 후 존스도 스미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초혐의인부절차를 위해 치안판사 앞에 섭니다. 이전에는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사선변호사로 일하는 크리스틴 해리슨이 존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최초의 심리에서 존스는 예비심문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예비심문이 열리기 전에 대배심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피고인은 예비심문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사실 기억하시죠? 존스의 체포 직후 검찰 측이 스미스와 존스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 측은 두 피고인에 대한 증거들을 동시에 대배심에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을 같은 수사관들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배심은, 치안판사가 존스에 대한 잡아 놓은 예비심문 기일 이전에 스미스와 존스 모두에 대해 기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배심이 이미 존스 사건에서 그의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존스는 예비심문을 신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대배심이 도대체 뭘까? 라고 궁금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배심은 도대체 뭐고, 그것은 왜 필요하며, 기소결정은 무엇이며, 대배심은 어떻게 기소결정 여부를 결정할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문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6조 및 7조는 대배심에 의한 기소결정 및 그 밖의 절차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 5조에 의해 “누구도 대배심에 의한 기소결정이나 고발결정 없이는 중범죄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7조는, 징역 1년 이상이 예상되는 범죄는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헌법적 보장을 연방 형사사법 체계 속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이 예상되는 범죄를 중범죄라고 부릅니다. 징역 1년 이하의 범죄를 경범죄라고 합니다. 경범죄 사건에서는 대배심의 기소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경범죄 사건에서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기소를 합니다. 기소장은 범죄 혐의의 중요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검사와 배심원 대표가 함께 서명해야 하는 기소결정과 달리, 기소장에는 오직 검사만이 서명합니다. 대배심은 일반 시민들의 집단이며, 그들의 임무는 어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를 법정에 세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방 헌법은 성급하고 부당하며 압제적인 기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배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연방 헌법은 대배심을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대배심은 검찰 내의 사법기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검찰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의 사정들로 인해 대배심이 기소결정 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배심에 증인을 소환해서 신문하고, 대배심에게 법률을 설명해 주고 기소결정까지 주문하는 것은 바로 연방 검사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대배심은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연방 검사의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배심은 기소결정을 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의 고발은 기각되는 것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르면, 대배심의 배심원들은 공공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원에 의해 소집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이 시민들에게 배심원 통보를 하고 소환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배심원 선정절차에 무작위 선정이 보장되도록,

다시 말해 모든 시민이 동등한 피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규정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배심은 법원의 해촉결정이 있을 때까지 업무 수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대개 8개월 이상은 활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배심은 16명에서 23명의 배심원들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그들 중 한 사람을 배심원 대표로 지명합니다. 배심원 대표는 대배심의 업무와 관련된 많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을 집니다. 배심원들 중 최소 12명의 찬성이 있으면 대배심은 피고인의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배심의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6조는 대배심의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강력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대배심은 기소결정을 합니다. 대배심의 기소결정에 의한 기소장을 배심기소장이라고 합니다. 스미스와 존스 사건에서 대배심이 제출한 기소장의 사본이 교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소장은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형식의 규격화된 서면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7조에 따르면, 기소장은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본질적 범죄사실을 평이하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피고인이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장에는 이것이 각각 별개로 기재됩니다. 각각의 범죄사실이 구분되어 기재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별개의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카운트, 즉 소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소장에 기재된 각 공소사실마다에는 그 범죄행위가 위반한 처벌법률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스미스와 존스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따로따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배심은 스미스와 존스를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기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1.과 공소사실 2., 즉 코카인 판매와 코카인 판매 공모라는 두 가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방형사소송법 제8조 A에서, 2개 이상의 범죄행위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거나 동일한 행위에 바탕하였거나 동일한 범죄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의 기소장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8조 B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피고인이 하나의 동일한 행동 혹은 그러한 일련의 행동들에 가담하였다고 주장된다면, 그들을 하나의 기소장으로 일괄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미스와 존스는 코카인 판매에 공모했다고 브라운 수사관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므로, 그들은 공동 피고인으로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기소장의 공소사실 3.을 보면, 존스는 판매 목적으로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혐의는 그를 체포할 당시에 바로 그 옆에서 마약이 발견되었던 사실에 근거합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

기소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반드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기소인부절차에서 행해집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기소인부절차는 공개된 법정에서 열리며,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읽어 주고, 혐의 사실의 핵심을 설명해 주며, 피고인에게도 답변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답변의 기회를 얻기 이전에 먼저 기소장의 사본을 교부받습니다. 기소인부절차에서 법원 사무관은 먼저 피고인들에게 선서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이름과 나이를 묻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재판절차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판사 : 존스 피고인, 최근에 병원 치료나 정신과 상담 받은 적 있나요?

존스 : 없습니다.

판사 :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나요?

존스 : 없습니다.

판사 : 지금 몸 아픈 데는 없습니까?

존스 : 예, 없습니다. 몸은 괜찮은 편이에요.

판사 : 좋습니다. 스미스 피고인한테는 이미 확인한 건데요. 존스 피고인, 기소장 사본 받아 봤습니까?

존스 : 예

판사 : 변호사님과 상의할 시간은 있었나요?

존스 : 무슨 말씀이신지

판사 : 사건에 대해 해리슨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존스 : 예, 얘기해 봤습니다.

판사: 변호사님, 존스 피고인은 기소장의 낭독을 원합니까? 기소장 낭독의 포기를 원합니까?

해리슨 : 존스 피고인은 기소장 낭독 신청을 포기합니다.

만약 마이클 존스가 혐의 내용의 낭독을 원한다면, 법원부사무관이 법정에서 큰 소리로 존스에게 기소장을 읽어 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존스는 이미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소장 낭독을 포기했습니다.

판사 : 좋습니다. 존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해리슨 : 피고인은 기소장의 모든 소인에 대해 무죄 답변을 합니다.

판사 : 스미스 피고인은 지금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해리슨 변호사님, 존스 피고인은 어떤 상태인가요?

해리슨 : 존스 피고인도 보석이 불허되어 구속 상태입니다.

판사 : 그렇군요. 피고인의 구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님이 보석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신다면, 심리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럼 이의신청에 대한 날짜를 잡아볼까요?

이 시점에서 치안판사는 보통 이의신청 및 공판전 회합의 기일을 정할 것이며, 공판기일까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인이 무죄 답변을 할 경우, 기소인부절차는 비교적 짧게 끝납니다. 경죄 사건에서 기소인부절차와 피고인의 최초혐의인부절차는 보통 동시에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경죄사건은 대배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소되기 때문이지요. 중죄 사건에서는 때때로 피고인이 체포되기도 전에 대배심이 피고인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신 곧바로 법원의 소환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4조는, 법원은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소환장도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환장은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법원에 인치될 때 발부됩니다. 하지만, 소환장은 단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출석할 것을 강제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정된 기일에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장 사본은 교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소인부절차는 연방 치안판사나 연방 판사가 주재합니다. 보통은 치안판사가 기소인부절차를 주재하는데, 중죄와 경죄 사건 둘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한 경우에는 인부 절차는 연방 판사에 의해 심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시다시피, 스미스와 존스 둘 다 인부절차에서 무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판전 회합과 이의신청 심리, 그리고 본 재판까지 추후 절차의 기일을 모두 치안판사가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은 형사재판촉진법이라는 성문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촉진법에서는 형사 사건의 기일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법원 및 검찰에 일련의 데드라인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따르면 연방 범죄로 체포된 피고인은 체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소되어야 하며, 공판절차는 피고인의 최초혐의인부절차일로부터 70일과 공소제기일로부터 70일 둘 중에

나중에 도래하는 날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촉진법을 초안할 때, 연방 의원들은 70일 이내의 공판절차 개시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이 형사재판의 공판전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촉진법은 이러한 사건들을 열거하고 그로 인한 기일 지연이 70일의 기한제한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통 공제가능사건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기간 지연은 공제가능기간이라 부릅니다. 공제가능기간을 가져오는 사건들이란, 피고인의 재판수행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심리, 피고인의 다른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 공판전 항소,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피고인의 이송, 공판전 이의신청의 제기, 70일의 기한제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공동피고인과의 사건 병합을 위해 야기된 합리적인 지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기일지연은 형사재판촉진법의 시계를 멈추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판전 이의신청의 제기로부터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70일 제한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형사재판촉진법은 재판이 규정된 기일 이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인이 부당한 절차지연 없이 적시에 재판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촉진법은 구속 피고인들의 사건에 대한 우선 적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석이 불허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의 사건은 구속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존스와 같은 구속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90일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 그는 석방되어야 하며, 법원은 그의 석방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

기소인부절차와 그 다음 예정된 법원의 기일 사이에 검사와 변호인은 증거

개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개시란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거나 파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판전 증거개시절차는 연방형사소송법 제16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증거개시 절차는, 형사재판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 타방 당사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이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미국의 형사재판은 당사자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각 당사자는 일정한 정보와 증거물을 비밀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개 증거개시 절차가 시작될 즈음에는 검사는 이미 사건에 대해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측의 수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대배심 절차가 완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조사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스미스 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어떻게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리 : 존슨 검사님, 안녕하세요.

론다 존슨 : 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증거개시 때문에 오신 거죠?

잭 리 : 예, United States v. Angela Smith 사건의 증거개시입니다.

론다 존슨 : 앉으세요.

잭 리 : 고맙습니다.

론다 존슨 : 여기 파일이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잭 리 : 그러죠. 먼저 검찰측이 가지고 있는, 스미스의 모든 진술을 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론다 존슨 : 스미스의 서면진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게다가 공동피고인인 존스는 전혀 진술을 한 바가 없어요. 스미스는 체포 당시에 브라운 수사관에게 구두진술을 했을 뿐이에요. 스미스는 ‘존스의 말을 전혀 듣지 못했고, 브라운 수사관은 존스를 신문해야 한다, 존스는 뺨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은 존스가 브라운에게 파는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잭 리 : 스미스는 당시 구속상태였어요. 그녀가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런 진술을 했던 건가요?

론다 존슨 : 아니, 그건 브라운에 대한 자발적 진술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아마 주요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잭 리 : 이런, 거기에 대해 제가 아무래도 증거이의신청을 해야 겠네요. 전과기록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스미스의 전과를 모두 파악하고 있나요?

론다 존슨 : 예심조사보고서를 보니, 아무 전과도 없네요.

잭 리 : FBI의 전과기록은 어떤가요? 거기엔 혹시?

론다 존슨 :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스미스는 전과가 없어요.

잭 리 : 알겠습니다. 증거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론다 존슨 : 검찰은 마약과 지갑, 마약이 담겨 있던 가방, 그리고 압수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잭 리 : 모든 물증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론다 존슨 : 마약과 가방은 마약단속국의 실험실에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그 실험실에 들어가 마약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편지를 써 드릴 게요. 그것들은 이미 분석이 끝나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잭 리 : 분석보고서도 있나요? 연방형사소송법 제16조는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실험결과도 개시되어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론다 존슨 :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540 그램의 코카인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잭 리 : 압수된 현금도 좀 봤으면 합니다.

론다 존슨 : 오, 이런. 그건 보실 수 없을 것 같네요. 법정에 압수 현금을 증거로 제출할 생각은 없어요. 연방형사소송법 제16조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이나 검찰이 법정에 제출할 예정인 증거물만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잭 리 : 하지만, 제 생각엔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중대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론다 존슨 : 이게 왜 판결에 중대하지요?

잭 리 : 음, 법정에서 아시게 되겠죠.

론다 존슨 : (웃음)

잭 리 : (웃음)

론다 존슨 : 그 문제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잭 리 :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론다 존슨 : 검찰이 가지고 있는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변호사님이 증거개시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연방형사소송법 제16조 (b)에 따라 이제 제가 그에 대응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법정에 제출하실 증거물을 갖고 계신가요?

잭 리 : 사건 현장에 대한 몇 장의 사진과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론다 존슨 : 예, 알겠습니다. 저도 스미스에 대한 변론이 충실히 이루어질 겁니다.

보시다시피,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연방형사소송법 제16조에 규정된 대로 증거개시를 위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론다 존슨 검사는 위 제16조에 따라 리 변호사에게 다음의 정보들을 개시하였습니다. 첫째, 존슨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한 진술을 공개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전과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스미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나중에 검찰측이 법정에서 활용하게 될 일정한 물적 증거를 변호인의 조사활동을 위해 개시했습니다. 넷째, 검찰측이 실시한 실험결과와 보고서를 개시했습니다.

피고인측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검찰은 이를 개시합니다. 위 제16조는 검찰측도 이에 대응하여 다시 피고인측에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적 증거나 실험 결과 보고서도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습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제16조는 또한 법정에서 서게 될 감정증인의 증언과 자격에 대한 요약서면을 상호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또한 일정한 방어수단의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이를 재판에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이의 주장은 범죄가 일어난 시각에 피고인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 때 연방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 전에 피고인 측에 이러한 주장들에 관한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 측의 알리바이 주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측이 심신상실 주장을 하려고 할 때에도 법 제12.2조는 공판 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를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재판 전에 자신이 주장할 변론들의 본질을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사들이 증거개시절차를 진행할 때 <브래디 자료>라는 말을 쓰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잭 리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 게요. 브래디 자료는 없나요?

론다 존슨 : 음,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제 파일을 한번 훑어볼 게요.

존슨 검사와 리 변호사는 Brady v. Maryland 라는 1963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미연방헌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중대 증거의 경우에 피고인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검찰은 이를 반드시 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브래디 자료>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진범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그렇습니다. 살인도구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찍혀 있었던 것은 유무죄와 관련된 중요 증거이므로 반드시 개시되어야 합니다. 살인사건에서 실제 총을 쏜 사람은 자기였다고 다른 공범자가 실토하였다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중범의 지위로 낮아지는 것이므로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브래디 원칙에 의하면, 유무죄와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반드시 피고인 측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리 증거의 개시는 피고인 측이 이를 재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브래디 자료를 피고인측에 개시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는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연방형사소송법 제16조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브래디 자료의 개시를 검찰에 요구해야 하는 책임은 피고인 측이 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와의 개시 협의 때 변호인들이 보통 브래디 자료를 요구합니다. 방금 리 변호사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론다 존슨 : 스미스 피고인이 무죄라고 밝혀 줄만한 자료는 보지 못했는데요.

잭 리 : 좋습니다. 검사님께서 만일 그러한 자료를 보신다면....

론다 존슨 : 물론이죠. 피고인의 유무죄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발견하면 즉시 알려 드릴 게요.

잭 리 : 예, 알겠습니다.

증거개시상의 대부분의 쟁점은 검사와 변호인 간에 비공식적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자료의 개시 여부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이 불일치하면 판사나 치안판사가 이러한 공방을 해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도 리 변호사는 재판 전에 마약단속국의 압수현금을 미리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의 신청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판전 이의신청의 절차가 됩니다. 이의신청이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검찰이나 변호인이 법원의 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전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 이의신청은 그 신청의 근거를 밝혀야 하고, 그로써 추구하는 구제조치나 명령을 적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 전에 제기가능한 이의신청의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증거개시절차에서의 이의신청, 공소제기의 하자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진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안젤라 스미스로부터 압수된 마약단속국의 현금을 재판 전에 미리 보게 해달라는 리 변호사의 이의신청은 위 제12조에 의거하여 제기될 것입니다. 혹 존스가 대배심의 절차에는 헌법 위반 사유가 있거나 대배심의 기소결정이 잘못 되었다며 이처럼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미스는 위 제12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판은 존스의 재판과 분리되어야 한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피고인이 모두 위 제12조에 따라 검찰이 특정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존스는 그에게 불리한 증거물이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불법 수색의 결과로서 취득된 것이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고, 스미스는 그녀에게 불리한 구두진술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의신청을 증거이의라 합니다. 증거이의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증거들을 재판에서 배제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위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중 일부는 양 당사자의 증거제출이 없이도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법원이 법률해석만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결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 위 제12조는 법률 적용에 앞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이의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절차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적용이 모두 문제되기 때문에 판사가 증

거에 대한 심리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 때 양 당사자는 심리에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란 증거물, 선서진술서, 직접 증언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니다. 증거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짓게 되며, 이렇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법률을 적용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당해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증거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 심리가 필요한 이의절차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반드시 즉시 기일이 잡히고 즉시 심리가 열려야만 합니다. 기소 인부절차에서 법원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종종 변호인에게 이의신청의 마감일을 지정하곤 합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 17.1조는, 법원이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쟁점을 심리함에 있어 양 당사자에게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1회 혹은 그 이상의 공판 전 회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공판 전 회합을 상태심리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공판 전 회합은 보통 공판이 시작되기 1주 혹은 2주 전에 열립니다. 이 심리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판 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과 변호인들은 예컨대 배심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같은 공판 자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판사 : 자, 마지막으로 공판 전에 검찰 측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모든 쟁크스 법 자료를 변호인 측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다 존슨 : 쟁크스 법 자료는 이미 모두 변호인 측에 제공했습니다. 다만, 존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측 증인 중 일부가 대배심에서 한 증언은 제외됐습니다. 이진 증인들이 공판에서 증언한 다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사 : 해리슨 변호사님!

해리슨 : 존슨 검사님으로부터 일부 쟁크스 법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찰 측 증인 두 명이 대배심에서 증언한 것은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아무튼 그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쟁크스 법은 의회에서 통과된 성문법입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 준 증인의 종전 진술 및 보고서를 모두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크스 법은 검사가 주신문에서 그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칠 때까지는 변호인 측에 이러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증인의 직접 증언에 관련된 진술과 보고서만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종종 쟁크스 법 자료에서 얻은 진술을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적극 활용합니다.

판사 : 존슨 검사님, 아시다시피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쟁크스 법 자료를 건네받은 변호인은 반대신문에 앞서 이를 검토할 만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걸 시간이 꽤 걸리고, 증거들을 순서 있게 재판에 제출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많은 법원에서도 그렇듯이, 검사님께서 공판 전에 미리 모든 쟁크스 자료를 변호인 측에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론다 존슨 : 예, 알겠습니다. 대배심에서의 증언을 사본해서, 공판 전에 변호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 변호사님, 그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배심 증언 맞나요?

해리슨 : 예, 맞습니다.

판사 : 좋습니다. 존슨 검사님 덕분에 검찰측이 증인 한 명 한 명 신문할 때마다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피고인측에 관하여 연방형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연방형사소송법 제26.2조는 쟁크스 법에서 검찰 측 증인에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피고인 측 증인의 종전 진술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판전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안젤라 스미스 피고인과 마이클 존스 피고인이 공판에 회부되는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Part III (1)

Part III : 공판과 유죄답변

우리는 본 비디오프로그램의 전 편에서 우리의 가상 사건인 United States v. Angela Smith and Michael Jones 사건을 사전심리절차의 맥락에서 논의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배심에서 양 피고 모두에게 기소결정 하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기소인부절차, 증거개시절차, 공판 전 신청의 제기 등을 통하여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비디오테이프에서는 스미스와 존스가 사건을 공판으로 해결하려 할지 아니면 유죄답변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할지에 관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사사건들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기각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합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48조는 법원의 허가 하에 검사가 배심공소, 공소, 고발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은 다양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당해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 점이 규명되거나, 중요한 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죄선고를 이끌어 낼 수 없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소기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 법원은 기속적 기각을 하거나 불기속적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 침해와 무관한 원인으로 기각하는 경우, 그러한 기각이 불기속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검찰이 사건을 재기하여 피고인을 동일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법원에 의하여 기속적으로 기각되면, 검찰은 동일 혐의로 피고인을 재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형사사건은 공판이나 유죄답변을 통하여 해결됩니다. 우선 유죄답변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범죄에 관하여 유죄답변을 하는 경우, 그는 판사나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당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법원에서 그 답변을 받아들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

판이 열리지 않고 사건이 바로 양형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게 될 것처럼, 법원이 유죄답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피고인은 배심재판을 받고 배심원들로 하여금 유무죄를 결정하도록 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피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면 무죄방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유죄선고에 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를 통하여 자신이 공판과정에서의 오류들로 잘못된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공판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고인이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하고 유죄답변을 하는 것일까요? 피고인은 이러한 권리들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득을 얻는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은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가 유죄답변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위 규정은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만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협상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판사나 치안 판사가 이런 협상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당사자들이 협약에 이르면 그 협약은 반드시 공개법정에서 판사에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후 판사는 당해 답변협약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제11조는 어떤 답변협약이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기소된 범죄나 또는 보다 가벼운 관련범죄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해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약에 있어서 피고인이 맡은 부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관련 공소의 기각, 법원에 관한 특정한 형의 권고, 피고인이 법원에 대하여 권고하는 형에 대한 이의불제기, 당해 사건에서의 적절한 형에 대한 의견일치 등 다양한 행위를 하는 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신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답변협상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별개의 두 범죄로 기소되었으

며 각 범죄에 정한 징역형의 최장기가 10년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양 범죄에 관하여 모두 유죄가 선고되면, 그는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검찰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 주는 조건으로 나머지 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면 그는 감옥에서 최장 10년만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협약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하지만 물론 협약에는 양측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검찰에서 과연 답변협약을 통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는지 자문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도 답변협상을 통하여 이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검찰은 합리적 의심 이상의 유죄입증책임 부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선고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공판을 통하여 피고인이 무죄 방면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죄답변은 비록 더 경한 범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유죄선고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공판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업무부담을 더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은 답변협약을 형사사건 해결의 공정한 방법 중 하나로 인정하였으며, 유죄답변이 우리 사법체계의 몇 가지 근본 목표를 달성함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구현해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유죄답변에 따르는 협약이 범죄자의 처벌을 담보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범죄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답변협약은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징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계일 수 있습니다. 스미스와 존스 사건에 있어서, 우리는 안젤라 스미스의 변호인 잭 리가 증거개시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사와 만나는 것을 보았으며, 증거개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스미스에게 유죄답변에 관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스미스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론다 존슨 : 제가 이번에는 당신의 의뢰인에게 유죄답변에 관련된 제안을 하고 싶군요. 제가 보기에 스미스가 급전이 필요해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빚을 갚기 위한 것이겠죠.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다른 마약 운반에도 연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그녀는 배후인물을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했죠.

잭 리 : 그녀의 공동피고인 존스와 같은 배후인물 말이죠.

RJ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미스에게 코카인 240그램의 유통 공모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고, 그 범죄에 따르는 5년의 최소형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JL : 음, 500그램의 코카인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공모한 점에 있어서 스미스가 5년의 의무적 최소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저는 당신의 제안을 그녀에게 검찰에 협조하고 의무적 최소형을 면할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RJ : 맞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은 의무적 최소형 이하로 형을 부과할 수 있는 명문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다른 범죄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도움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이 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검찰은 스미스가 존스에 대한 공소유지에 상당한 조력을 제공하고 실제 공판과정에서도 그렇게만 해준다면 답변협상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신청을 제기하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JL : 하지만 저는 만약 그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하더라도 여전히 법원은 스미스양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그녀의 형을 정하기 위하여 유통된 코카인의 실제 양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RJ :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540그램의 코카인 유통으로 인하여 스미스는 양형기준 상 범죄등급 26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스미스가 자신의 형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

다고 판단하면, 범죄등급은 23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리는 심지어 범죄등급 23에 따르더라도 안젤라 스미스 사건에 있어서 양형 기준에 따른 선고범위는 5년의 명문상 최소형과 별 차이가 없는 46개월에서 57개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냅니다. 그는 만약 스미스가 검찰에 대하여 존스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조력을 제공한다면, 검찰은 조력제공에 상응하여 양형기준 이하로의 형 선고를 신청하는 양형기준 5 K 1.1 상의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답변협약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존슨은 그런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임을 지적하지만 신청을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RJ : 음, 좋습니다. 저는 답변협약의 일환으로 5 K 1.1에 따라 양형기준이 하로의 이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JL : 감사합니다.

RJ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신청을 할 때까지 스미스가 존스의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당한 조력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양형 상 이탈을 신청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JL : 당신이 스미스로부터 어떤 종류의 조력을 기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RJ : 음, 한 가지입니다. 검찰은 존스가 담당한 범죄행위 분담내용에 관하여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흥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계류 중인 현안에서 존스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코카인 2킬로그램이 실제로 존스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입증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스가 체포되었을 당시 코카인 2킬로그램은 그로부터 10피트 거리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JL : 그래서 당신이 그를 코카인의 유통목적소지 혐의로도 기소한 것이군요.

RJ :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건에서의 한 가지 문제는 수사관이 그가 그 코카인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그가 그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존스는 그 코카인이 룸메이트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룸메이트는 현재 마을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JL : 아! 그래서 만약 스미스가 그 아파트에서 코카인을 챙기고 있는 존스를 보았거나, 존스가 스미스에게 코카인을 아파트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검찰에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군요.

RJ :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유통목적소지 혐의에 있어서 존스에 대한 유죄선고를 이끌어 내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과연 스미스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JL : 그리고 둘째로, 만약 그녀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도움을 주려 하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되겠지요. 스미스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스미스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커다란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겠군요. 만약 존스에 대한 검찰의 인물파악이 정확하다면, 존스의 전화 한 통화로 스미스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스미스가 검찰을 도우면서 처하게 될 위험을 감안하면, 저는 그녀에 대한 구체적인 형기를 답변협약에 정해두고 싶습니다.

RJ : 안됩니다. 저는 특정 형기를 정하는 답변협약을 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미스가 특정 형기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점을 판사에게 권고하고 양형기준 이하로 형을 선고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마 18개월 정도가 되겠지요. 만약 그녀가 우리에게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판명된다면 말입니다.

JL : 12개월의 형을 권고하여 주는 것은 어떤가요?

RJ : (말문이 막히다.)

JL : 이보세요. 우리는 제 의뢰인을 상당한 위협에 처하게 하는 협조에 대

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젊은데다가, 약아빠진 범죄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RJ : 15개월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말 15개월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가 조력을 제공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어쨌든 존스가 총구를 겨누고 억지로 스미스로 하여금 마약을 팔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JL : 알았습니다.

RJ :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11조에 따르면 답변협약이 특정형에 대한 검찰측 권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것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이는 법원이 유죄답변은 받아들이지만 15개월의 권고형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스미스가 청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JL :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미스양에게도 그 내용을 알릴 테니 그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검사는 특정 상황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을 만들어 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는 만약 법원에서 유죄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청원을 철회하고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公所기각 내용을 담고 있는 답변협약을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은 청원을 철회하고 공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특정 형기가 적절하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법원이 특정한 형을 권고하는 내용의 답변협약을 거부하면 피고인은 청원을 철회하고 공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존슨과 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나중에 검찰의 권고형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청원을 철회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JL :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제 의뢰인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녀가 결정할 문제이지요.

변호인이 검사로부터 유죄답변과 관련된 제안을 받으면 변호인은 반드시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의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 변호사가 말하였듯이 유죄답변 여부에 관한 실제적인 결정은 피고인에 의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답변협약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예정에 따라 공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는 제안된 협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심을 보이면서도 더 나은 조건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상사건에서 스미스는 검찰의 주장을 가늠해 본 후, 자신이 공판을 통해 유죄선고를 받기 쉽다고 판단합니다. 그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존스와 함께 마약판매행위에 연루된 점에 관한 후회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유죄답변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녀가 복역할 형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찰에 협조하기로 결심합니다. 리 변호사는 스미스의 결정내용을 검사에게 알립니다. 그런 후에 대리인들(변호인과 검사)은 스미스가 유죄답변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립니다. 그러면 스미스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유죄답변을 하기위한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Optional Discussion Break (토의를 위한 휴식시간)

우리의 가상사건에서 안젤라 스미스는 기소결정을 받고 기소인부절차를 거친 후 공판이 계류 중인 시점에서 검찰과의 답변협약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건이 항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기소인부절차나 공판 전에 법원이 정해 놓은 특정한 시기에 답변협약에 관한 고지를 받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적으로 공판에 이르기 전이면 언제나 답변협약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배심에 의한 기소결정이 있기 전에 답변협약에 관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피고인의 예비심문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몇몇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이 절차상 더 일찍 답변협약을 체결할수록 피고인에게 더욱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답변협약이 피고인의 최초혐의인부절차 후 기소결정을 위한 대배심 사건심리 시작 전에 체결됩니다. 반면에, 어떤 당사자도 초기에는 유죄답변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배심공소를 통해 공판이 열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어느 한 당사자가 매우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당사자가 의지하고 있는 증거가 공판에 제출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변화가 당사자로 하여금 유죄답변을 하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와 존스 사건에서 검찰은 아마도 발견된 코카인이 존스의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존스의 룸메이트인 로렌스 그린을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결정이 내려진 후 그린을 증인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안젤라 스미스의 협조가 존스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배심공소가 이루어진 후 스미스에게 유죄답변에 관한 제안을 합니다. 요점은 당사자들이 심지어 피고인이 정식으로 기소되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답변협약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건의 정황이 양쪽에게 그런 협약을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만든다면 말입니다. 안젤라 스미스와 검찰이 제출한 답변협약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원사무관 : 법원에서 United States v. Angela Smith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 나는 검찰과 스미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해서 답변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JL&RJ : 맞습니다. 재판장님

판사 :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는 제가 피고인의 유죄답변을 인정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피고인, 저는 당신이 이 사건에서 유죄답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지성적이며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는 오늘 이곳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당신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AS : 알았습니다, 재판장님.

판사 : 답변협약에 따르면, 만약 피고인이 코카인을 유통시키려고 공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면 검찰은 코카인을 실제로 유통시킨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의하여 검찰은 18 U.S.C. § 3553 (e)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5년의 의무적 최소형 이하로 형을 부과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RJ : 맞습니다, 재판장님. 협약에 따르면 스미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마이클 존스의 형사소추와 관련하여 상당한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 검찰이 그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JL : 그리고 스미스 피고인은 검찰에 그와 같은 조력을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습니다.

RJ : 말하자면, 그녀는 검찰을 위해 본 공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존스에 대해 아는 바를 진실하게 증언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판사 : 알겠습니다, 다른 협약사항이 있나요?

RJ : 검찰은 또한 스미스 피고인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신청하겠습니다.

JL : 아울러 검찰은 그 신청을 통해 스미스 피고인에 대하여 15개월의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만약 기대대로 협조한다면 말이죠.

RJ : 맞습니다, 재판장님.

JL : 그것이 협약사항의 전부입니다.

판사 : 법원사무관께서 피고인에 대한 선서절차를 실행해 주시겠어요?

법원사무관 : 오른 손을 들어 주세요. 당신은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신에게 맹세하나요?

AS : 맹세합니다.

판사 : 당신은 이제 선서를 했고 만약 거짓된 답변을 한다면 나중에 그 답변이 당신에게 해가될 수 있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에 관하여 형사소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나요?

AS : 그렇습니다.

판사 : 정식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법원은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속성을 이해하고 유죄답변을 할 정신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을 합니다. 유죄답변 절차 상 이부분에서 피고인은 나이, 학력, 정신병이나 마약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어떤 약물이나 주류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관하여도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후 그녀는 배심기 소장 사본을 송달받은 후 공소내용에 관하여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할 기회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변호인의 업무수행에 만족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판사 : 당신은 리변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충분히 만족하나요?

AS : 네 그렇습니다.

판사 : 좋습니다. 이제 저는 답변협약의 조건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원은 피고인과 함께 답변협약의 핵심 조건들을 검토하고 난 후 그 조건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것인지를 피고인에게 질문합니다.

판사 : 이 사건에서 당신의 유죄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누군가 어떤 다른 약정을 한 사실이 있나요?

AS : 그런 일 없습니다, 재판장님.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는 또한 피고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죄답변을 하고 있는지를 법원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 : 이 사건에서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에게 유죄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있나요?

AS : 강요라고요? 아뇨.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니다.

판사 : 그럼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지요. 누군가 당신으로 하여금 유죄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약속을 하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있나요?

AS : 아니오.

판사 : 친구들, 친척들, 변호인이나 누구든지 말입니다.

AS : 아닙니다, 재판장님

판사 : 당신은 이 유죄답변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인가요?

AS : 그렇습니다.

판사 : 말하자면, 당신의 자유의지로 말이죠?

AS : 네, 그렇습니다.

판사 : 당신이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AS : 그렇습니다.

참으로 자발적인 것이기 위하여 유죄답변을 하려는 피고인은 반드시 그 내용을 알고 이해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처벌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젤라

스미스의 유죄답변이 자발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그녀가 그녀의 유죄답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는 징역형의 잠재적 형기를 알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징역형의 최장형기와 법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형기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미스는 그녀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최대액과 다른 종류의 처벌에 관하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 : 당신은 유죄답변의 대상범죄인 코카인 유통공모행위가 중죄라는 사실을 아나요?

AS : 알고 있습니다.

판사 : 만약 당신의 유죄답변이 인정되는 경우 당신이 그 범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되고 그러한 판단으로 인하여 당신이 가지는 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들, 즉 선거권, 공무담임권, 배심원단으로 종사할 권리, 총기를 소지할 권리 등과 같은 것 등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AS : 네, 알고 있습니다.

판사 : 좋습니다. 스미스 피고인, 다음으로 제가 당신이 유죄답변을 하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500그램 이상의 코카인유통 공모행위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는 경우, 검찰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당신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AS : 예.

판사 : 그리고 당신은 그 범죄에 대한 법률상 최고형을 알고 있습니까?

AS : 어... 징역형의 최장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사 :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코카인 유통 공모행위에 대한 당신의 유죄답변을 받아들이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최장기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금액은 무엇입니까?

AS : 어... 저는 징역형의 최장기는 40년까지이고 벌금은 2백만 달러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 그리고 또한 법원이 부과하게 될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의 의무적 최소기간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유죄답변의 결과 피고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다른 처벌에 관하여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당해 범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손해회복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해회복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젤라 스미스의 사건에서 손해회복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미스가 유죄답변을 하려는 마약범죄가 개인 피해자에 관련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 : 그리고 스미스 피고인, 마지막으로 당신은 중범죄에 대하여 유죄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기금에 법정 특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청원에 따른 모든 결과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AS :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다음으로 법원은 리변호사와 존슨 검사가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이전에 의논한 바 있는 양형기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을 할 것입니다.

판사 : 자 이제 스미스 피고인, 저는 당신이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협조에 따른 검찰의 신청으로 인하여 의무적 최소형기인 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는 것은 맞습니다.

AS : 그렇습니다.

판사 :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저는 1984년 양형개혁법에 따라 당신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양형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이 형사 사건에서 양형을 하면서 따라야 하는 양형기준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당신이 유죄답변을 하는 대상범죄, 관련된 마약의 양, 당신의 전과와 같은 것들을 수치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이용하여 제가 당신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범위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AS : 네, 알고 있습니다.

판사 : 당신과 리 변호사는 당신의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해본 적이 있나요?

AS : 네, 있습니다.

판사 : 당신은 양형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당신과 검찰 측을 대변하는 존슨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할 기회를 가지고 나서야 적절한 기준형량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AS : 네, 리 변호사와 ... 우린 그에 관하여도 논의하였습니다.

판사 : 또한 당신은 법원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범위를 결정한 후에도 어떤 상황에서는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양형범위보다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나요?

AS : 그러니까... 음... 이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죠?

J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당신 사건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에 기하여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범위가 50~60개월이라고 결정한다면, 제가 그 범위에서 이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양형관련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AS : 네, 알겠습니다.

판사 :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당신의 유죄답변을 받아들이는 경우 저는 검찰이 당신 사건에 있어서 신청하기로 동의한 이탈을 인정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이탈이 정당하다고 결정한다면 말입

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이탈이 정당하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설령 그 이탈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찰에 의하여 권고된 15개월 형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답변협약 상의 15개월 권고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의 징역형을 당신에게 부과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AS : 네, 이해하였습니다.

판사 : 당신은 가석방이 금지되었으며 만약 당신에게 징역형이 내려진다면 가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알고 있나요?

AS : 네.

판사 : 당신은 만약 제가 유죄답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검찰 측의 15개월 권고형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유죄답변을 철회할 절대적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나요?

AS : 네, 이해합니다.

판사 : 좋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죄답변을 하는 피고인은 중요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유죄답변이 자발적인 것이기 위해서 피고인은 그런 권리들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고 이를 알면서도 그러한 권리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판사 : 다음으로 당신의 헌법상 권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기소된 범죄에 대하여 무죄답변을 하고 이를 고집할 권리 즉, 이 사건을 공판으로 진행시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AS : 네.

판사 : 그리고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AS : 네.

다음으로 법원은 배심재판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검찰 측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신문할 권리, 변호할 권리, 증인을 소환할 권리, 만약 피고인이 공판에서 증언하고 싶지 않다면 묵비할 권리 등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공판을 거쳐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그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법원에 항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죄 답변을 할 때 이런 권리들을 포기합니다. 검찰이 기소결정 상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공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향하는 대신 유죄 답변을 선택한 피고인은 형 선고를 위해서만 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는 피고인의 유죄답변을 받아들이기 전에 피고인이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법원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당신은 만약 법원에서 유죄답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공판이 열리지 않고 공판 받을 권리나 제가 말씀드린 공판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AS : 네.

판사 :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부과되는 형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는 지닐 것이며 그 형이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Optional Discussion Break (토의를 위한 휴식시간)

또한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는 법원에서 유죄답변의 사실적 근거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 : 스미스 피고인, 저는 아까 당신에게 코카인 유통 모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검찰이 무엇을 입증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한 적

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할 일은 검찰에게 만약 이 사건이 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증거를 통하여 어떤 사실이 들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검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슨 검사.

RJ : 만약 사건이 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찰은 증거를 통하여 올해 8월 4일 피고인 안젤라 스미스와 공동피고인 마이클 존스가 우리 시(市) 센터빌 지역에서 코카인 유통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약단속국에 속한 브라운 수사관이 공동피고인에게 다가갔을 당시, 그들은 함께 밴 트럭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요약하도록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일을 물어보거나, 그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통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답변의 대상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것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그런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상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나거나 피고인이 사용 가능한 유효한 방어방법의 존재가 드러나면, 법원은 유죄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판사 : 그럼 스미스 피고인, 이제 당신은 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지난 8월4일 당신은 마이클 존스라는 사람과 코카인을 유통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있습니까?

AS : 네, 그렇습니다.

판사 : 당신과 존스는 얼마나 많은 양의 코카인을 유통시키려고 하였나요?

AS : 500 그램을 약간 넘은 540 그램 정도였습니다.

RJ : 정확하게 540그램이었습니다, 재판장님.

판사 : 맞습니까?

AS : 네.

판사 : 좋습니다. 나는 유죄답변을 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합

니다. 코카인 540그램의 유통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하여 당신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유죄답변인가요 아니면 무죄답변인가요?

AS : 유죄답변입니다.

판사 : 이로써 법원은 United States v. Angela Smith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기 위한 능력과 적격을 갖추고 있고, 그녀의 유죄답변은 자발적으로 의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코카인 유통 모의죄의 필수요소를 포함한 사실적 근거가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스미스 피고인의 유죄답변에 대한 최종인정을 양형조사보고서가 검토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양형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국의 양형조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법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유죄답변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달력 위에...

법원이 유죄답변을 처리하는 데에는 30분가량 걸립니다. 왜냐하면 연방형사소송법 제11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답변을 받아들이기 전에 몇 가지 분야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답변협약의 조건, 유죄답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소의 속성, 유죄답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 등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함으로써 어떤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제11조는 법원에서 유죄답변의 사실적 근거 및 유죄답변의 자발성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법원 판사들은 법원에 유죄답변이 제출되는 때에 특별한 기재양식이나 서면으로 된 답변협약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위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공개법정에서의 구두절차를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답변협약서의 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20조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소를 다른 지방법원

으로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제20조(a)는 피고인이 A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B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기소결정이나 고발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Stone이 A지역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이전의 유죄선고로 인하여 그녀가 이미 A지역에서 구금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후 그녀는 B지역에서 기소결정됩니다. 위 제20조(a)에 따르면 만약 Stone이 유죄답변하기를 원하면, 그녀는 B지역으로 이감되는 대신에 A지역에서 유죄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Stone은 기소결정이 계류 중인 B지역에서의 공판을 포기하고 A지역에서 형을 선고받는 것에 동의하며 A지역에서 유죄답변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서면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그런 후 각 지방의 검사들이 이를 승인하면, 기소결정이나 기소가 계류 중인 B지역의 법원사무관은 A지역의 법원사무관에게 관련서류를 송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Stone의 유죄답변은 A지역에서 행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20조(b)에 따르면, 피고인이 기소결정되기 전에도 유사한 절차가 취해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고발이 계류 중인 지역과 다른 지역에 피고인 Stone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녀는 유사한 절차를 밟고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죄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번째 비디오테이프에서 계속됩니다.

Optional Discussion Break (토의를 위한 휴식시간)

Part III (2)

Part III : 공판과 유죄답변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United States v. Angela Smith 사건은 스미스가 코카인 유통 공모 혐의에 관하여 법원에 유죄답변을 하면서 공판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공동피고인인 존스에 대한 사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스미스의 사건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미스는 전과가 없지만, 존스는 위험무기휴대폭행 및 중절도 행위에 관한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존스에 대한 기소내용은 스미스에 대한 기소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존스는 540그램의 코카인의 유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범죄에 관하여 기소되기도 하였지만, 스미스와는 달리 존스는 로렌스 그린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 2킬로그램의 코카인을 유통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존스는 매우 심각한 범죄자로 간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소내용과 관련된 마약의 양, 브라운에게 마약을 판매함에 있어 그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주된 역할, 전과 등은 검찰에게 존스가 불법마약의 유통에 매우 심대하게 연루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를 불법마약을 판매하고 살아가는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고 이에 따라 장기간 구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검찰은 존스와 답변협약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존스는 그의 죄를 계속 부인하고 공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존스 : 잠복수사관이 다가올 때 제가 벤 트럭에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안젤라에게 코카인을 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젤라에게 “만약 네가 마약을 팔고 싶으면, 이 차에서 내려.” 라고 말하였고, 그녀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녀가 자리를 떠난 후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약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

변호사 :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스미스가 당신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으며 당신이 자신의 아파트에 있던 코카인을 스미스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함께 밴 트럭을 타고 나갔다는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존스 : 켄장 안젤라! 전 그녀를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가석방 같은 것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공판과정에서 그녀가 검찰을 위해 증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랄 뿐입니다.

존스 : 그게 중요한가요? 흠...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믿겠죠. 그저 내가 두 번의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나를 주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군요. 글썄,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 좋아요! 자 이제 당신이 체포되었을 때 아파트에서 발견된 2킬로그램의 코카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존스 : 이보세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로렌스 그린에게 세를 든 것뿐이라고요. 그건 로렌스의 코카인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30분 쯤 전에, 나는 로렌스가 그 과자깡통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안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배심원단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죠?

변호사 :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배심원단이 당신의 두 가지 전과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날 아침 그 아파트에 있었고 공판에서 증언해 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존스 : 그럼요. 제 친구 샤론은 로렌스가 그 과자깡통을 가지고 야단을 떨고 있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들고 있는 로렌스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 공판은 한 번 해볼 만 한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United States v. Michael Jones 사건은 공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공판이 열리게 될까요? 연방형사소송법 제18조는 몇 가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면 형사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와 공판은 범죄가 발생한 연방사법관할에서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클 존스는 우리의 가상 도시인 센터빌 부분의 관할구역에서 공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United States v. Michael Jones 사건은 판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배심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차 수정 헌법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이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23조는 6차 수정헌법을 배심재판 받을 권리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피고인이 검찰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으로 배심재판을 포기하지 않으면 배심원에 의하여 공판이 심리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제23조의 권리포기요건이 충족되면, 사건은 배심원단 대신 판사에 의하여 심리될 것입니다. 공판이 열리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배심원단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또한 상당수의 사건이 배심원단 없이 판사나 치안판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 제23조는 또한 당사자들이 12명 미만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통해 심리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은 12명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배심재판 받을 권리가 실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속한 사회공동체의 보통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심원단이 증거를 조사하고, 법률에 관한 지도를 받으며, 사건을 결정하는 절차가 배심재판인 것입니다. 배심원단으로 종사하기 위하여 각 배심원들은 공정해야만, 즉 양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배심원들은 비밀리에 평의를 하고 평결을 내립니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하고 오직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에 기인한 것

이어야 합니다. 그럼 형사사건에서 배심원단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일까요? 대배심과 마찬가지로 배심원 후보들은 공판이 열리는 지역사회공동체의 표본집단에서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사건을 공판할 준비가 되면, 법원사무관은 배심원실에 호출을 하고 이런 배심원 후보들의 집단을 법정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선정될 배심원들은 이 후보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후보단이 도착하고 난 후, 판사나 변호사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심원 후보들에 대한 질문절차는 예비심문(Voir Dire)이라고 합니다. Voir Dire는 진실을 말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입니다. 대부분의 심문은 공개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심문은 판사석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비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행해지는 질문들은 배심원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 관하여 평가하고 각각의 배심원 후보들이 사건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배심원의 답변이 공정하게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어느 쪽 변호사든 그가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심원에 대한 이유부 기피라고 합니다. 만약 판사가 변호사와 의견을 같이하면, 그는 당해 배심원 후보를 이유부 기피로 배척시키게 될 것입니다. 당해 배심원 후보가 배심원단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유부 기피와 아울러 검사와 변호인은 모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수의 배심원을 기피할 권리를 가집니다. 변호사들은 전단적 기피권을 행사함으로써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합니다. 변호사들은 첫 번째 12명의 배심원 후보들이 배심원단석에 착석하고 난 후 전단적 기피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한 변호사가 어떤 배심원을 이유부 기피하면, 그는 반드시 판사에게 당해 기피권 행사에 관한 근거를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단적 기피에 관하여는 판사에게 근거를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 배심원 후보는 내 주장에 유리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그 변호사는 당해 배심원을 후보단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전단적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단적 기피권이

배심원 후보에 대한 직감 등 다양한 이유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존슨과 해리스 변호사가 교대로 전단적 기피권을 행사하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아울러 판사는 동시에 두개의 기피권 행사사실을 공지함으로써 배심원 후보들이 어떤 변호사가 특정 배심원을 기피했는지 모르게 하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또한 변호사들이 전단적 기피권을 행사하는 동안 12명이 남을 때까지 기피된 후보들은 다른 배심원 후보들로 대체된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당사자들은 이유부 기피권과 전단적 기피권을 행사함으로써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원하지 않는 후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기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기피권 행사 후 남게 된 최초 12명의 후보자단이 실제 공판을 심리하게 될 배심원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24조가 연방법원의 배심원에 대하여 규율합니다. 이 규정은 배심원 후보들에 대한 예비심문을 법원이 직접 할지 아니면 변호사들로 하여금 하게 할 지에 관한 결정재량을 법원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안판사들과 지방법원 판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경우 위 제24조는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추가질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제24조는 중범죄나 경범죄 사건에서 양측이 행사할 수 있는 전단적 기피권의 회수 제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제24조는 각 사건에서 6명 정도의 예비배심원을 뽑아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배심원들은 정규배심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되고, 배심원단과 함께 사건에서 제시되는 증거들을 조사하지만, 정규배심원의 대체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건을 결정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규 배심원이 아프거나 기타 이유로 인하여 배심원 역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대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배심원단이 선정되고 선서를 하고 나면, 양측은 모두진술을 합니다. 모두진술은 대리인들이 배심원단에게 공판에서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을 제시하고

자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변호인은 모두진술에 관하여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바로 모두진술을 하거나, 검찰에서 공판 활동을 모두 마친 후 모두진술을 하기로 하거나, 아예 모두진술을 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리슨 변호사는 검찰 측 모두진술이 끝난 후 바로 마이클 존스를 위한 모두진술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존슨 : 그리고 저는 재차 여러분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안젤라 스미스의 증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젤라 스미스는 증언대에 서서 여러분께 “네, 저는 브라운 수사관에게 마약을 팔았습니다.”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고인인 마이클 존스 역시 그렇게 마약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이 브라운 수사관, 화학자, 안젤라 스미스 등의 증언을 포함한 모든 증거들을 조사하고 난 후, 검찰에서는 여러분께 이 사건 세 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유죄평결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 : 해리슨 변호사, 지금 모두진술을 하시겠습니까?

해리슨 : 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존슨 검사, 존스 피고인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증거는 피고인 마이클 존스가 브라운 수사관에 대한 마약판매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증거들은 또한 그 코카인이 피고인 마이클 존스가 아니라 로렌스 그린 소유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것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센터빌에 있는 공원에서 브라운 수사관에게 코카인을 판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스미스 피고인이며 그녀 단독으로 행동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스미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체결한 유일한 계약이 아닙니다. 스미스 피고인은 체포 후 검찰과 또 다른 종류의 계약을 맺었음을 증거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모두진술이 끝나고 난 후 증거제출이 시작됩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에 의해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번복시키고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의심 이상의 수준으로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검찰의 임무입니다. 검찰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증거를 제출합니다. 검찰 측 증인을 신청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은 검찰 측 증거로 됩니다. 증인을 신청한 대리인에 의한 최초 질문을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존슨 검사의 브라운 수사관에 대한 주신문을 조금 살펴봅시다. 주신문에서 신문하는 대리인은 증인을 유도신문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즉, 어휘 구사를 통하여 당해 질문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하는 식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슨 : 당신이 표시된 돈을 건네자 마약을 내어 준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될 기회가 있었나요?

브라운 : 네, 저는 그녀의 이름이 안젤라 스미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슨 :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밴 트럭의 승객이 바로 스미스 피고인이었나요?

브라운 : 네, 그렇습니다.

존슨 : 자, 스미스 피고인이 그 밴 트럭에서 내리기 전에 운전수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죠?

해리슨 :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유도신문하고 있습니다.

판사 : 이의를 인정합니다. 질문을 다시 하시죠, 존슨 검사.

판사가 어떤 변호사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이의를 인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 판사는 이를 기각할 것입니다.

존슨 : 알았습니다, 재판장님. 스미스 피고인이 밴 트럭에서 내리기 전에 그 차량의 운전사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나요?

브라운 : 글쎄, 스미스 피고인은 운전사를 쳐다보고, 무언가 말을 하였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존슨 : 그때 스미스 피고인은 무슨 행위를 하였나요?

브라운 : 그녀가 운전사와 무언가 대화한 직후, 밴 트럭에서 내려 제게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숲에 있는 공터로 가서 거기서...

피고인은 브라운과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을 대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대면할 권리는 6차 수정헌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6차 수정헌법은 검사가 주신문 과정을 통하여 증인에게 질문을 한 후 피고인이 검찰 측 증인을 대면하고 반대신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의 질문은 보통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내용을 강조하거나 증인이 검찰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진술이 거짓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리슨 변호사의 브라운 수사관에 대한 반대신문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리슨 : 브라운 수사관, 당신은 스미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마이클 존스 피고인이 그녀에게 마약을 건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는 것이죠?

브라운 : 그렇습니다.

해리슨 : 그리고 당신이 그 밴 차량에 처음 접근했을 때부터 스미스양이 차에서 내리기까지 당신은 존스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요?

브라운 : 그렇습니다.

해리슨 : 당신이 밴 트럭에서 나눈 대화는 스미스 피고인과 나눈 것이죠? 맞죠?

브라운 : 맞습니다.

해리슨 : 당신은 존스 피고인과 대화한 적이 있었나요?

브라운 : 없습니다.

해리슨 : 마약이나 다른 것에 관해 말한 사실이 없나요?

브라운 : 없습니다.

해리슨 : 그리고 차량에서 내려 당신과 함께 공터로 간 사람은 물론 스미스 피고인이었지요?

브라운 : 그렇습니다.

해리슨 : 당신은 스미스 피고인과 거래를 하려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브라운 : 그제...

해리슨 : 당신과 스미스 피고인은 계속 밴 차량에서 대화를 나누었죠? 그렇죠?

브라운 : 맞습니다.

해리슨 : 그리고 그녀, 스미스 피고인은 밴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눌 당시 그녀의 허리에 지갑을 차고 있었죠?

브라운 : 맞습니다.

해리슨 :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지퍼로 잠겨 있었죠?

브라운 : 그랬을 것입니다.

해리슨 : 브라운 수사관! 그것이 지퍼로 잠겨 있었나요? 아닌가요?

브라운 : 잠겨있었습니다.

해리슨 : 당신이 코카인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은 스미스 피고인이 공터에서 지갑 지퍼를 열었을 때이죠?

브라운 : 맞습니다.

해리슨 : 그리고 스미스 피고인아 당신에게 코카인을 팔았을 때에는 밴 차량으로부터 약 1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브라운 : 아마 그쯤 되었을 것입니다.

해리슨 : 그리고 존스 피고인은 그때 자리에 없었죠, 그렇죠?

브라운 : 네 없었습니다. 그는 뱀에 타 있었어요.

해리슨 : 그는 뱀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브라운 : 네, 그는 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증거법에 따르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주신문 후에 증인을 반대신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모든 증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을 제시한 후 피고인은 기소결정에 있는 기소내용에 대하여 무죄방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형사소송법 제29조가 피고인 측이 그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쟁점 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선고를 이끌어 내기에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무죄방면판결 신청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검찰은 기소결정 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그래서 무죄방면판결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어떤 합리적 배심원도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 제29조는 변호인이 변론활동을 마친 후 또는 심지어 공판진행이 끝난 후에도 무죄방면 신청을 재기갱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공판활동이 끝난 후 무죄방면판결에 대한 신청을 거부하면 공판은 계속됩니다. 이제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스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리슨 변호사가 강조한 부분을 증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스 : 저는 당신에게 안젤라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고 싶군요.

해리슨 : 그리고 싶을 것이란 점은 압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증언을 하게 되면 검사가 당신의 전과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배심원이 당신의 중절도와 폭행 전

과에 대하여 듣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존스 :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언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리슨 : 그럼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판사 : 존슨 검사, 반대신문해도 좋습니다.

존슨 :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존스 피고인, 당신은 이 주(州)에서 중절도 혐의로 사건번호 F1443 사건을 통하여 유죄가 선고된 그 존스씨인가요?

존스 : 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존슨 : 그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문의 사본을 보시면 기억이 날까요?

존스 : 어... 아뇨, 팬찮습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존슨 : 그리고 당신은 이 주(州)에서 위험무기휴대 폭행 혐의로 사건번호 F8989 사건을 통하여 유죄가 선고된 그 존스씨이기도 하지요?

존스 : 네, 그것도 저입니다.

해리슨 : 그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증언하면, 판사는 법률상 당신의 중죄전과 2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단은 당신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전과를 평가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존슨 : 만약 배심원단이 그런 것을 들으면,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은 한 마디도 믿지 않겠군요.

해리슨 : 그래서 저는 당신이 증언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드리는 것입니다. 5차 수정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거부특권 때문이지요. 그것은 검찰의 기소에 직면하여 당신이 묵비할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슨 : 하지만 제가 증언을 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이 제가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해리슨 : 배심원단에게는 당신이 증언할 의무가 없고 당신을 유죄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지도가 행해질 것입니다. 판사가 이를 말해줄 것입니다.

존슨 : 그러면 제 친구 샤론이 유일한 증인이겠네요.

해리슨 : 그렇습니다.

존슨 : 그래도 샤론은 좋은 증인이 되어 줄 것이고, 당신은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죠?

해리슨 : 맞습니다.

존슨 : 좋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알겠어요. 저는 증언하지 않기로 하죠.

해리슨 변호사는 중요한 점을 지적해 내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 측은 검찰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배심원단에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은 증언하지 않기로 하여섭니다만 그의 친구인 샤론 부스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부스는 아파트에서 존슨을 만났을 때 룸메이트인 로렌스 그린e이 과자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해리슨 : 그리고 당신이 보기에 이것이 그린씨가 들고 있던 과자상자가 맞나요?

샤론 : 네, 그렇습니다.

H : 그걸로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S : 그냥 그걸 손에 들고 있었습시다. 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볼 수는 없었어요. 내가 로렌스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매우 긴장한 것으로 보였고 손으로 그 상자를 덮어버렸으니까요.

H : 그러면 당신은 대략 언제쯤 그린e씨가 이걸 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인가요?

S :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마이크, 죄송합니다, 어... 마이클 존스가 샤워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나는 그를 기다리는데 싫증이 났고 그래서 빌딩 로비로 담배를 사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검사는 반대신문에서 질문을 통하여 부스 증인이 피고인 존스를 수년 간 알아왔으며 그를 가까운 친구로 생각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존슨 : 자, 부스 증인, 당신은 주신문에서 당신이 마이클 존스와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샤론 : 네.

J : 당신은 그를 약 5년간 알아 왔지요?

S : 흠... 그쯤 되었습니다.

J : 당신은 마이클 존스 피고인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말하면 되겠지요?

S : 흠... 매주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됩니다.

J : 그리고 당신은 존스 피고인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시겠죠?

S : 글썄... 아니오.... 그러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가 제출된 후 배심원단이 평의를 시작하기 전에 판사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 원리에 관하여 배심원단을 지도합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어떤 법원리가 적용되는가에 관하여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단에게 지도·설시하기 전에 판사는 그러한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고 어떤 지도·설시가 적절한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0조가 배심원 설시에 관하여 규율합니다. 위 제30조는 양측의 대리인들이 법원에 특정 내용의 배심원단 설시를 요구하는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조문에 의하면 법원은 최종진술이 행해지기

전에 대리인들에게 어떤 내용의 설시를 하려고 하는지 알려주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29.1조는 배심원단에 대한 최종진술을 규율합니다. 최종진술에서 각 측은 증거자료를 요약하고 증거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옳다는 점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위 제29.1조는 검찰에서 먼저 최종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변호인이 최종진술을 합니다. 변호인의 최종진술이 끝난 후, 검찰은 반박 최종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존스를 위한 최종진술에서 해리슨 변호사는 검찰이 존스에 대한 어떤 공소내용에 대하여도 입증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리슨 : 신사 숙녀 여러분, 그날 센터빌에서 발생한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 의뢰인이 정말로 그 마약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다면, 안젤라 스미스 피고인이 브라운 수사관에게 마약을 팔기 위하여 굳이 밴 트럭을 떠나 숲 쪽으로 가려 했을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모두 마약거래를 바란 것이라면, 바로 밴 트럭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세 명 중 한명은 마약거래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명의 사람이 바로 제 의뢰인 마이클 존스 피고인입니다. 증거는 스미스 피고인이 억지를 부릴 때 존스 피고인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머리를 가로짓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해 스미스 피고인과 브라운 수사관은 그 밴 트럭을 떠나 그들만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숲 속 공터로 가야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안젤라 스미스 피고인은 이곳에 와서 여러분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녀가 체결한 두 번째 거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15개월 이하로 복역하도록 검찰이 권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거래 말입니다.

또한 해리슨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발견된 2킬로그램의 코카인은 존스의 룸메이트인 로렌스 그린^e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리슨 :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그 코카인이 로렌스 그린의 것이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 샤론 부스 증인은 여러분에게 마이클 존스 피고인이 아니라 로렌스 그린^e이 그날 아침 그 용기 상자를 들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용기였나요? 신사 숙녀 여러분, 나중에 안에서 마약이 발견된 바로 그 과자상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찰 증거물 번호 9번입니다. 여러분은 부스증인이 로렌스 그린^e에게 다가갔을 때에 관한 증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온통 긴장했고 여러분께서는 왜 그가 긴장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는 코카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하여 아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2킬로그램의 코카인이 누구 소유인지를 아시게 된 것입니다. 로렌스 그린^e입니다. 마이클 존스 피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DEA가 나타난 뒤로 도망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의뢰인이 아닙니다. 마이클 존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된 후로도 마을을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늘 이곳에서 기소에 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젤라 스미스 피고인은 “오, 마이클 존스와 저는 코카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걸 마이클 존스의 아파트에서 가져와 브라운에게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미스 피고인의 증언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녀가 15개월 형을 얻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그녀를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종진술이 끝난 후, 판사는 사건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법 원리에 관하여 배심원단에 게 지도 설시를 합니다. 그런 후 배심원단은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 평의를 시작합니다. 배심원단 평의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며칠이나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면 모든 당사자들이 다시금 공개법정에 모이게 되고 평결이 낭독됩니다. 이 비디오 프로그램의 다음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이 United States v. Michael Jones 사건의 평결이 어떠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Part 4

Part 4 : 양형과 판결 후 절차

이제까지 3개의 비디오프로그램에 걸쳐 우리는 United States v. Angela Smith and Michael Jones 존스 사건을 연방형사사법절차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테이프에서, 우리는 피고인 스미스가 유죄답변을 하였지만 피고인 존스는 무죄답변을 하여 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테이프에서 우리는 배심원단이 존스를 유죄로 판단할지 아니면 무죄로 판단할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양형절차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연방형사소송법을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형에 적용되는 법규정과 양형기준도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이 내려진 후 즉, 형 선고 후에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입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1조는 마이클 존스 사건에서의 평결절차를 규율합니다. 위 제31조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법정에서 판사에게 전달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스 사건에서 평결은 어떻게 날지 살펴봅시다.

판사 :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건에 관하여 평결에 이르렀다는 메모를 전달받았습니다. 배심원대표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검토를 위해 평결을 전달해 줄 법원사무관에게 평결 서식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스 피고인, 일어나서 배심원단을 향해 주십시오. 배심원대표님, 배심원단은 기소결정에 나타난 1번 공소사실인 통제물질 코카인 유통행위에 관하여 평결에 이르렀나요?

배심원 대표 : 네 그렇습니다.

판사 : 기소결정의 1번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심원단 여러분은 피고인을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배심원 대표 : 유죄입니다.

배심원단은 기소결정 상의 모든 공소사실에 관하여 마이클 존스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1조는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하여 평결 후 배심원 여론조사가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여론조사에서 각 배심원은 배심원 대표에 의하여 발표된 평결에 동의하는지를 대답합니다. 위 제31조는 만약 여론조사를 통해 평결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동의를 존재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경우, 배심원단은 배심원단실로 돌아가 추가적인 평의를 하게 되거나, 만약 평결에 대한 의견일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배심원단이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한 후에도 평결에 이르지 못한 배심원단을 “불일치 배심” 이라고 합니다. 불일치 배심이 생기면, 심리무효 선언을 하고 피고인은 새로운 배심원단에 의하여 다시 심판받게 됩니다. 심리무효라 함은 법원이 당해 재판을 그 시점에서 종결시키고 아무런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배심원단은 무죄평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죄평결은 무죄방면이라고도 합니다. 피고인이 형사기소로부터 무죄방면 되면, 그 기소는 재차 제기될 수 없습니다.

양형 전 절차

안젤라 스미스와 마이클 존스는 모두 양형절차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후 피고인에게 특정 형벌을 부과하는 법원의 판단을 말합니다. 안젤라 스미스의 유죄답변과 답변협상 과정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녀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될 몇 가지 요소를 추려내었습니다. 그러니 양형절차 규율 법규와 절차적 규정들을 조사하는 데 스미스 사건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연방법원에서의 양형절차를 규율하는 연방형사소송법 제32조는 지체 없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어떻게 형을 가늠하게 될까요? 적절한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 판사는 선고 대상이 된 개인에 대하여 매우 많은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판사

는 또한 범죄사실을 정확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머포드 보호관찰관과 같은 보호관찰관들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원을 돕습니다.

머포드 :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머포드 보호관찰관입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연방형사소송법 제32조 및 양형절차를 규율하는 연방 법률이 요구하는 정보를 법원에 제공합니다. 우리는 법원에 보내는 양형조사보고서의 형태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형조사보고는 양형이 행해지기 전에 마련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거나 재판을 거친 결과 유죄로 인정되면 판사는 보호관찰소에 양형조사보고서를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또한 그 때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정보를 제공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양형하는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고려함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양형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정보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위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양형조사보고서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중 하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및 양형위원회 정책기술의 적용방법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권고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안젤라 스미스 사건을 예로 들면, 스미스와 같이 연방범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은 의회에서 통과된 양형관련 규정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규정들 중 하나인 1984년 양형개혁법은 양형위원회라고 불리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임무는 연방법원에서 사용될 양형 정책과 실무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이 양형함에 있어 사용할 양형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양형기준과 법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규가 우선하고 그래서 양형기준은 그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장기의 의무적 최소형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미스 사건에서, 법률 상 의무적 최소형은 5년의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고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형기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18 U.S.C. § 3553(e) 규정은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 소추에 관하여 검찰에 상당한 조력을 제공한 경우 검찰은 이를 반영하여 의무적 최소형 이하로의 형 선고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의무적 최소형 이하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스미스 사건에서 그러한 신청을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무적 최소형이 적용되지 않고 스미스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미스의 양형조사보고에 있어서 법규상 5년의 의무적 최소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검찰이 18 U.S.C. § 3553(e)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스미스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계산하여 보기도 할 것입니다. 의무적 최소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판사들은 양형기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부과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즉, 보호관찰을 부과할지, 벌금을 부과할지 또는 유기징역형을 부과할지, 적절한 형기는 무엇인지, 적절한 벌금액수는 무엇인지, 범죄자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만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복수의 형을 병과할 것인지, 유기징역형은 동시에 즉시 기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이 집행된 후에 따로 기산되어야 하는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가석방을 지양하고 범죄자가 실제로 부과된 형을 복역하게 함으로써 양형 상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사범죄자들이 유사한 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양형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양형 상 통일성을 제고하며, 예를 들어 다른 범죄보다 2배 이상 심각한 범죄는 2배 더 심각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양형 상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이런 양형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완전하고 정확한 사실인정이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양형기준은 규칙의 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에 관련

된 사실에 적용되고 결국 법원은 실제의 범죄관련 사실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딱 알맞은 형만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은 범죄관련 사실을 양형조사보고서에 담아 법원에 전달하고, 변호사들이 보호관찰관의 과오를 확신시키지 못하면 보통 판사는 이러한 사실들을 법원의 사실인정으로 채택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양형조사보고서를 마련하면서 이런 양형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범죄관련 사실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방법에 관한 권고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기준지침에는 양형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많은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양형기준지침은 양형기준, 양형기준의 해석 및 적용방법을 설명하는 정책기술, 양형기준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주석 등을 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지침은 또한 양형표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형표를 안젤라 스미스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범위를 산출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일정한 기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양형범위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관련 규정이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딱 정해진 형기를 설정하는 대신에 6개월에서 12개월과 같은 형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판사에게 양형조사보고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양형범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알맞은 양형범위는 6~12개월이고 범죄자에게는 그 범위 안에서 6, 7, 9, 12개월 중 어느 하나의 형기를 선고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양형표는 그 수직축이 범죄등급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범죄경력범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축이 서로 맞닿는 지점이 적용되는 양형범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범죄등급 21과 범죄경력범주 5에 맞는 양형범위는 70~85개월입니다. 물론 저는 양형표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범죄등급과 범죄경력범주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보호관찰관은 특수한 업무서면을 이용하여 이 작업을 행합니다. 업무서면을 작

성하면서 저는 우선 발생 범죄에 대하여 어떤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규정 색인 A의 첨부자료를 살펴봅니다. 21 U.S.C. § 841(b)(1)에 위반되는 500그램의 코카인 유통 모의행위에 관하여 유죄답변을 한 스미스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 2D1.1.이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저는 양형기준 2D1.1.에서 규정하는 지침사항을 검토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저는 500그램의 코카인 유통 모의행위에 대한 범죄등급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약수량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표를 살펴보고 26의 기본 범죄등급이 적용됨을 알게 됩니다. 범죄규모, 범죄 실행 시 역할, 범죄자가 사법방해를 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에 부여된 점수를 가감함으로써 그 기본 범죄등급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안젤라 스미스 사건에서 답변협약에 기재된 기소내용을 살펴보고 양측 대리인 및 스미스와 대화를 나눈 후, 적용 가능한 조정사항은 그녀가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이 양형조사보고서에서 제가 권고해야할 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조정요소를 얻으려면 피고인이 분명하게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죄답변의 실행은 이에 관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요소를 적용하면 피고인의 기본 범죄등급에서 2,3점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피고인은 분명하게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2점의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찰스 머포드 : 자, 그것이 검찰에서 말하고 있는 발생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안젤라 스미스 : 그들이 맞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저는 마약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일을 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했다고요. 큰 실수를 한 것이죠.

하지만 스미스의 기본 범죄등급이 16을 초과하는 것이며 그녀가 제때 검찰

에 유죄답변 의도를 표현하고 재판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책임인정에 관한 조정사항으로 3점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스미스의 기본 범죄등급에서 3점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녀는 23의 조정된 기본 범죄등급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적절한 범죄경력범주를 결정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범죄자의 이전 범죄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수치 체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초범이므로 전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런 점수도 부여받지 않고 따라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경력범주인 범주1에 속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형표는 당해 범죄등급과 범죄경력범주에 관하여 46개월에서 57개월에 걸친 양형범위를 나타내 줍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시간

이제 저는 스미스 사건에서 권고할 양형범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용할 수 있는 양형 선택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보호관찰,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손해회복, 벌금부과 또는 징역형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양형규정과 양형기준에 따를 때, 모든 사건에서 이 모든 선택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미스 사건에서는 어떤 선택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호관찰은 어떨까요? 양형개혁법에 따르면, 보호관찰만을 독립된 형으로서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에 처해진 범죄자는 법률 규정이나 판결에서 정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법원에서 명한 대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안젤라 스미스가 유죄를 인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보호관찰의 선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

형표에 따를 때 최소 징역 6월 이상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도 보호관찰의 선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 46월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스미스에게는 보호관찰이 선택될 수 없습니다. 형집행 후 보호관찰은 어떨까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거나 법에 따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징역을 마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에 처해진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에 처해진 범죄자도 법률 규정이나 판결에서 정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미스가 유죄답변을 한 범죄에 관한 법조항은 법원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하더라도 그 후에 최소 4년의 보호관찰이 뒤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미스는 징역형을 모두 받은 후에 4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손해회복은 어떨까요? 손해회복이란 범죄의 결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전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18 U.S.C.처럼 특정 영역의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것인데, 다른 사건들에서는 보호관찰이나 형집행후 보호관찰의 준수조건 중 하나로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스미스의 마약범죄가 규정된 21 U.S.C. 은 손해회복에 대해 규정이 없으며, 본 사건에서는 개인이 피해를 입은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손해회복이 선택형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선택가능한 다른 형은 벌금의 부과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서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벌금납부가 피고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울 경우에는 벌금형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스미스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범죄에 대해 유죄답변을 했으므로, 스미스는 100달러의 특별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은 1984년 범죄피해자법에 의해 설립된 범죄피해자 기금에 적립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는 그녀의 구금 및 형 집행 후 보호관찰에 소요된 정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벌금의 납부 역시 스미스의 지불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 비용을 납부할 능력

이 없다거나 이것이 그녀에게 부당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법원은 스미스에게 수감비용을 납부하라고 명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교정국이나 그 밖의 다른 연방 기관들이 개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상의 적용가능한 법령들에 따르면, 징역형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며, 앞서 우리가 양형표를 적용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미스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만 합니다. 양형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선택형들을 고려한 후 스미스에게 선고할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양형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사실 기억나시죠? 이것이 아마도 스미스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은 양형표상에서 정해지는 46개월에서 57개월 사이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스미스 사건에서 그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결론 내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벗어난다는 말은 양형기준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형 관련 법령들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형의 감경 혹은 가중의 정황이 존재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는 양형기준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때 법원은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연방 정부의 공무원인 피고인이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서 정부 물품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물품 절도는 6년 이상 반복되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의 범위는 징역 30개월에서 37개월까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 양형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가중적 양형 정황이 존재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양형기준은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긴 했지만, 절도가 장기간 계속되었다는 가중적 양형인자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6년 이상

장기간 범죄를 계속 해온 것이 가중적 양형인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에 이와 같은 인자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법원이 양형기준의 상한을 뛰어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37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양형기준 자체에서 밝힌 정책기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기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는 사유로 검찰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스미스의 답변협상에서 이미 보았듯이, 만일 스미스가 존스의 기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면 검찰에서도 법원에 그녀에게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15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스미스가 마이클 존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측을 위해 핵심적 증언을 해 줌으로써, 검찰의 존스에 대한 공소유지에 적극 협력했던 사실도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스미스가 답변협상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자신의 몫을 다했다면, 검찰측도 법원에 ‘스미스가 존스의 공소유지 및 유죄입증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며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합의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제겐 흥미로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연방형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양형조사보고서는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양형조사보고서는 스미스가 검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때문에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판사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기준에서의 이탈을 승인할 것인지 실제로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판사입니다. 자, 이제 스미스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스미스가 저지른 범죄의 전체적인 범죄등급을 산정했습니다. 둘째, 저는 스미스 피고인의 범죄경력범주를 결정했습니다. 셋째, 저는 스미스의 범죄경력범주와 범죄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범위를 선택했습니다. 넷째, 저는 양형기준에 따라 스미스 사건에 적용가능한 선택형을 검토

했습니다. 즉, 보호관찰, 징역형, 형 집행 후 보호관찰, 벌금, 손해회복 중에서 법원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저는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양형조사보고서는 공적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 제32조에 따르면, 양형조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그 작성에 동의하거나 유죄답변을 하거나 재판 후에 유죄로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 제출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공개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제32조는,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으로 하여금 양형조사보고서 중 양형인자와 관련된 내용을 읽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 해로운 정보는 보고서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의 진단소견, 비밀리에 밝혀진 정보의 출처,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피고인 등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정신분석의사가 안젤라 스미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 보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권유를 하는지 그 이유를 스미스가 모두 다 아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 법원이 양형조사보고서에서 배제된 정보에 의존하고자 한다면, 그 배제된 정보는 서면 형태로 요약되어서 양형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안젤라 스미스 :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요, 제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건 보호관찰관이 판사에게 어떤 형을 추천했냐는 거예요.

잭 리 : 그 정보는 우리가 가진 양형조사보고서의 사본에서 삭제되어 있어요. 보호관찰관이 판사에게 양형추천을 하지만, 우리는 보고서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보호관찰관이 말한 어떤 양형등급과 양형범주가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리 변호사의 말이 맞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2조는, 어떠한 양형등급과

양형범주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내린 결론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법원은 실제적인 양형추천은 보고서에서 배제하라고 보호관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견 리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인데요, 본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 제32조는 양형조사보고서가 늦어도 선고 35일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들은 이를 14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으면, 보호관찰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 및 검찰 측과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추가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고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는 양형심문이 열리기 늦어도 7일 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해결되지 못한 이의제기는 보고서에 추록 형태로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이의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양 당사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양형과 관련된 사실의 서면 합의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규율하는 연방 및 지방의 법령들은 판사들이 양형 관련하여 사실확정을 하는 데 양형조사보고서가 핵심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고 전의 적절한 시점에 양형조사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규정들은 양 당사자가 부동의했던 법적 쟁점 및 사실관계의 쟁점을 양형심문이 열리기 이전에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

연방형사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또한 법원은 양형심문 기일 당일에 피고인 및 검찰 측이 양형조사보고서에 이의제기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을 세우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을 검토한 후 결국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위 제32조는,

법원이 쟁점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서면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은 양형조사보고서에 다시 덧붙여져서 최종적으로 교정국에 전달됩니다. 양형심리의 구조도 사실은 거의 연방형사소송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양형심문이 열리면,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가 법정에서 출석합니다. 양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을 대동하고 보호관찰관도 심리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형조사보고서의 사본과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형심문에 대한 기초 사실들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판사 : 안녕하세요? 리 변호사님! 스미스 피고인과 함께 양형조사보고서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셨나요?

잭 리 & 안젤라 스미스 : 예, 판사님

판사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의해 보셨어요?

잭 리 : 예

판사 : 좋습니다. 피고인측은 보고서의 추록에 기재된 이의제기 말고 또 다른 이의제기 하실 게 있나요?

잭 리 : 추가로 이의할 것은 없습니다.

판사 : 그렇다면, 양형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 양 당사자로부터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으므로 본 재판부는 이를 사실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에 관련된 주장이나 증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스미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경미한 역할만 했다는 주장에 따른 양형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확정하고 나서, 어떤 양형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스미스 피고인도 양형전에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며, 기록을 위해 선고 이유도 밝힐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보겠는데요. 스미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경미한 역할을 한 게 아니어서 2 포인트의 감경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보호관찰관의 사실인정에 대해 피고인측이 이의제기를 하셨네요. 리 변호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잭 리 :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장은, 스미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므로 양형기준 3B1.2 감경요소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수준이 2포인트 감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장은 이게 다입니다. 양형기준 3B1.2의 주석집은 경미한 가담자를 ‘대부분의 다른 가담자들보다 비난정도는 약하지만, 그 역할이 최소한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설사 보호관찰관이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인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법원은 스미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경미한 역할만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코카인을 판매하는데 치밀한 공모를 한 사람은 존스였고, 브라운 수사관에게 판 코카인은 존스가 입수한 것이며, 존스가 스미스를 범행현장까지 태워다 줬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존스가 범행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주도를 했던 것입니다. 달리 보면, 스미스는 이 일에 있어서 존스에게 완전히 고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운 수사관에게 마약을 팔기 위해 존스가 면밀히 계획을 짰 일련의 행동들 중에서 스미스는 단지 그 마지막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거리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을 존스가 혼자 모두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스미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미스는 존스의 배달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 사건에서 경미한 가담자로서 2 포인트의 감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사 : 존슨 검사님, 이 쟁점에 대한 검찰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론다 존슨 : 검찰은 부동의합니다. 그동안 존스 피고인이 스미스 피고인보다 전과도 많고 중죄를 많이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존스의 전반적인 행태와 이 특정 사건에서 스미스의 역할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스미스는 이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경미한 가담자로 보아 줄 수는 없습니다. 스미스는 존스가 코카인을 가지러 아파트에 가는 데 동행했으며, 이를 팔기 위해 센터빌까지 같이 갔고, 흥정을 하는 동안에도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코카인을 들고 뱅에서 내려 브라운 수사관과 함께 후미진 곳으로 가서 그에게 코카인을 건넌으로써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은 바로 스미스였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존스와 스미스가 함께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에 있어서 스미스의 역할은 존스의 역할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사 : 예, 알겠습니다. 양 쪽의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본 재판부는 이 쟁점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실제로 브라운 수사관에게 코카인을 전달한 건 바로 스미스 피고인이므로, 본 재판부는 스미스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경미한 역할을 한 게 아니므로, 양형기준 3B1.2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수준을 2 포인트 낮추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양형조사보고서상의 사실인정에 대한 피고인측의 이의를 기각합니다.

잭 리 : 좋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는 없습니다.

Judge : 스미스 피고인, 법원은 당신의 유죄답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처음 유죄답변을 제출하셨을 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양형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로 미룬 바 있었지요. 검토를 마친 결과 법원은 당신의 유죄답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십니까?

안젤라 스미스 : 네.

Judge: 이제 법원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는 바입니다. 법원은 540그램의 코카인이 관련된 이 사건에서 적정한 기본 범죄등급은 26이라고 판단합니다. 양형조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에도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 3E1.1에 따라 형량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스미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온전히 수긍했기 때문이지요. 조정 결과 기본 범죄등급은 23으로 낮아지고, 전과기록이 없기 때문에 스미스양의 범죄경력범주는 1로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로써 양형기준에 따라 적정 선고 형량 범위는 46 내지 57개월이 됩니다.

Judge : 적용 가능한 양형기준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잭 리 : 기존에 제출한 이의 외에 추가할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Judge : 존슨 검사님은 어떻습니까?

론다 존슨 : 없습니다. 재판장님

Judge :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적절한 선고형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저는 검찰 측에서 제출한 신청과 리 변호사께서 스미스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출한 몇몇 자료들을 검토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선고 시 법원의 참고를 위한 메모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스미스 피고인의 자매와 사촌의 편지도 받아보았고, 이들이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모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 제출사항이나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잭 리 및 론다 존슨 : 없습니다, 재판장님.

Judge: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견표명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견표명 절차는 변호인, 검찰 및 피고인이 법원에 대하여 양형과 관련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선고형이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Judge : 리 변호사님, 피고인을 대리하는 당신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잭 리 :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건에서 스미스 피고인이 처음부터 두 가지 근본적인 선택을 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유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검찰 측이 존스 피고인을 기소하는 데 협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조차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은 정책기술 5K1.1에 따라 양형기준에서의 이탈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스미스 피고인을 대신하여 감경을 위한 양형기준 이탈을 신청하였고, 이는 바로 그녀가 존스 피고인을 기소하는 데 상당한 조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론다 존슨 : 맞습니다, 재판장님.

잭 리: 검찰 측 신청은 그녀의 협조가 어떻게 존스 피고인의 유죄평결을 이끌어 냈는가와 같은 협조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심원단이 존스 피고인의 사건에 있어서 세 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한 유죄평결을 내린 것을 보면 스미스 피고인의 증언이 얼마나 진실하고도 신빙성 있는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어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최종적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스미스가 법원에 의견표명을 하게 됩니다.

Judge : 좋습니다. 스미스 피고인, 법원이 선고를 하기에 앞서 직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안젤라 스미스 : 네. 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될 당시 두 아이의 엄마면서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청구서는 쌓여가고.....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구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Judge : 좋습니다. 이제 법원은 선고를 하겠습니다.

토의를 위한 휴식

Judge : 법원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신청을 비롯하여 양쪽에서 제출한 관련 된 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건에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검찰 측의 신청은 법원으로 하여금 양형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의무적 최소형을 선고하지 않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검찰 측은 이 사건에서 스미스 피고인을 위해 형 감경을 위한 양형기준 이탈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피고인에 대하여는 15개월의 징역형이 적합하다는 구형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형개혁법에 따라 이제 형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론다 존슨 : 없습니다, 재판장님.

잭 리 : 없습니다, 재판장님.

판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일단 형이 선고되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소멸하고, 선고 후 7일 안에 판사가 인지하게 된 기술적 오류를 제외하면 선고 상 오류를 바로잡을 권한 또한 이와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는 양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Judge : 이제 1984년 양형개혁법에 따라 법원은 안젤라 스미스 피고인에게 교정국 감독 하의 21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석방된 후에는 4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금에 관하여 법원은.....

법원은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 측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구형관련 내용을 포함한 답변협상이 첨부된 유죄답변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그 구형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유죄답변을 철회할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Judge :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회복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법원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가 이러한 형 부과의 이유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측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 최소형을 부과하는 대신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양형기준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미스 피고인의 존스 피고인 사건에 대한 상당한 조력에 비추어 양형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하였습니다. 스미스 피고인의 협력이 시기적절했고 존스 피고인 사건에서 진실한 증언을 통하여 검찰이 유죄평결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원은 답변협상에 따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형 권고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일정한 구형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그런 권고내용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내리게 된 결론은 비록 이 사건에서 상당한 감경을 위한 양형기준 이탈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15개월의 징역형은 스미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범죄 사건이고, 스미스 피고인은 조직적인 마약 거래상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500그램 이상의 코카인을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답변협상 결과 검찰 측이 제출한 징역 15개월의 구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에 제공한 협력과 범죄행위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 법원은 21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바입니다. 법원은 또한 양형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부과한 형에 대하여 검찰과 변호인은 이의가 있습니까? 또는 이와 같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론다 존슨 : 검찰은 이의 없습니다, 재판장님.

잭 리 : 없습니다, 재판장님.

Judge : 멍포드씨, 양형조사보고서에서 다투어진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는 기록서면을 준비해 주십시오. 법원에서는 표준 서식에 의한 형 부과 이유 설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제 집무실에서 법원의 이 유설시 사본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멍포드 : 네, 재판장님.

법원이 양형 이유를 설시한 서식 사본은 여러분의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원에서 이와 동일한 서식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형이유로 양형조사보고서를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법원 속기사로 하여금 선고 시 설시한 이유를 기록해 두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Judge : 흠..... 리 변호사님, 멍포드씨가 스미스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유 설시를 교정국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할 겁니다.

잭 리 : 좋습니다.

Judge : 교정국은 이 자료들을 스미스양을 분류·감독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교정국은 사법부의 기관이 아닙니다. 연방검찰청 및 법원보안국과 마찬가지로

로 교정국은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종종 판사에게 특정 교도소에서의 복역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판사는 피고인을 특정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도록 교정국에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가 피고인이 특정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교정국에 권고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Judge : 흠..... 법원사무관이 유죄답변, 법원의 사실인정 및 양형 등을 실시한 적정한 유죄판결문을 마련할 것입니다. 스미스 피고인 행운을 빕니다. 연방보안관 앞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더 처리할 사항이 없다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2조가 양형심문 절차에서 요구하는 바를 요약해봅시다. 첫째로, 동 규정은 해당 사건에서 적용되는 양형분류 및 양형기준과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미리 제공된 양형조사보고서 또는 그 개요를 읽고 다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조사보고서나 그 개요에 존재한다고 주장된 오류에 있어서 위 제32조는 법원이 그 쟁점을 해결하는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32조는 법원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양형과 관련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판사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위 제32조는 선고 후 유죄판결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유죄답변, 평결 및 양형에 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법원사무관의 입회하에 판사가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55조는 형사절차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법원사무관이 행해진 날짜와 함께 법원의 모든 명령과 판결을 기록하여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판결 등재는 법원사무관이 형사기록편람

에 판결을 등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가 이루어지면 양형조사보고서는 피고인, 변호인, 교정국, 지방법원과 항소가 제기 시 항소법원에 대하여만 공개됩니다. 양형조사보고서는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 후 절차

판결이 등재된 날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항소제기기간이 그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입니다. 연방항소절차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형사판결이 등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재공판 신청, 판결 집행정지 신청 또는 무죄방면 신청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이 형사기록편람에 등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재판 후 신청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자면, 마이클 존스처럼 공판을 거쳐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공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3조가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의를 위하여 재공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공판을 열게 됩니다. 마이클 존스는 또한 연방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거하여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배심의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법원이 사건에 대한 심리권한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신청의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도 유죄 선고일로부터 또는 유죄답변이 기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형사소송법 제29조에 의하면 마이클 존스와 같은 피고인은 유죄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방면 신청을 제출 또는 재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심원이 유죄평결에 이르지 못한 채 해산될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방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재판 후 신청의 제기기간을 연

장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연장 명령은 당초의 7일의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밖에 형사사건에서 양형 및 선고가 이루어진 이후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로는 양형의 경정과 보호관찰의 철회가 있습니다.

연방형사소송법 제35조 (a)에 의하면 법원은 항소 법원에서 형의 위법 부당성 및 양형기준 적용오류 등이 인정된 경우 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존스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으로, 연방형사소송법 제35조 (b)에 의하면 검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타인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피고인의 실질적이며 상당한 조력을 반영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론다 존슨 : 존스씨, 유죄 선고를 받은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아주 긴 수감생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클 존스 : 아주 긴 수감생활이지요.

수사관 브라운 : 맞아요.

론다 존슨 : 당신을 이 곳으로 오게 한 이유는 혹시 당신이 검찰의 센터빌 지역 마약거래 수사에 협조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해리스 변호사님으로부터 들은 바 있겠지만, 검찰은 당신의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 연방형사소송법 제35조 (b)에 근거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어요.....

마이클 존스: 네, 들었습니다.

론다 존슨: 음.....

마이클 존스: 계속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수사관 브라운: 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마이클 존스: 듣고 있다고 말했을 텐데요.

수사관 브라운: 음.....

마이클 존스: 그래요, 관심 있습니다. 뭘 알고 싶은 거요?

연방형사소송법 제33조 (b)는 다른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상당한 조력을 반영하기 위한 검찰의 형 감경 신청은 최초에 법원이 형을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방형사소송법 제32.1조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또는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또한 보호관찰 또는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이 조정되거나 연장될 때 거치게 되는 절차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지방법원에서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4번째이자 마지막 비디오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의해서 시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근무하시게 될 지방법원의 규칙들은 우리

가 지금까지 살펴본 절차들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프로그램에서 검토했던 사항과 다른 것이 발견되면 감독자로부터 그와 같은 차이점에 대한 이유를 듣고 그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